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19



국민권익위원회

발간사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극복이 최상위 목표가 된 시기에는 경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부패·청렴’은 자칫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청렴과 경제성장은 상반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선순환적 목표입니다. 반부패와 청렴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윤활유라 할 것입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5년간에 걸쳐 국민총생산이 67조 원 상승하며 일자리도 2만5천 명에서 5만 1천 명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함께 반부패·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숨어있는 부패발생 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찾아내어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선진화 된 부패예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1,644건의 제·개정 법령안을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335개 요인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담은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부패영향 평가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목차와 개선결과 및 예시로 정리된 개선의견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접근을 원하는 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자발적 개선 사례를 수록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의 변화된 인식에 맞추어 당초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하여 부패 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화된 부패영향평가 기준이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이해하고 해당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길 바라며,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0. 1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8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3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7
제5절 2019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20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30
1. 준수	30
1) 준수부담의 합리성	3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7
3) 특혜발생 가능성	50
2. 집행	57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7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99
3) 재정누수 가능성	109
3. 행정절차	120
1) 접근의 용이성	120
2) 공개성	134
3) 예측 가능성	153
4. 부패통제	165
1) 이해충돌 가능성	165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86

제3장 현행 법령 및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사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194
제2절 농·축·수협 회원조합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218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252
1. 입찰단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252
2. 퇴직자와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254
3.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256
4.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에 대해 감경 불가 규정 신설	258
5.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263
6.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공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265

부 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68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80
3. 관련 법령	293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93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296
색인.....	297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19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1장

부패 영향평가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2019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1절 /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수립·통보,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절차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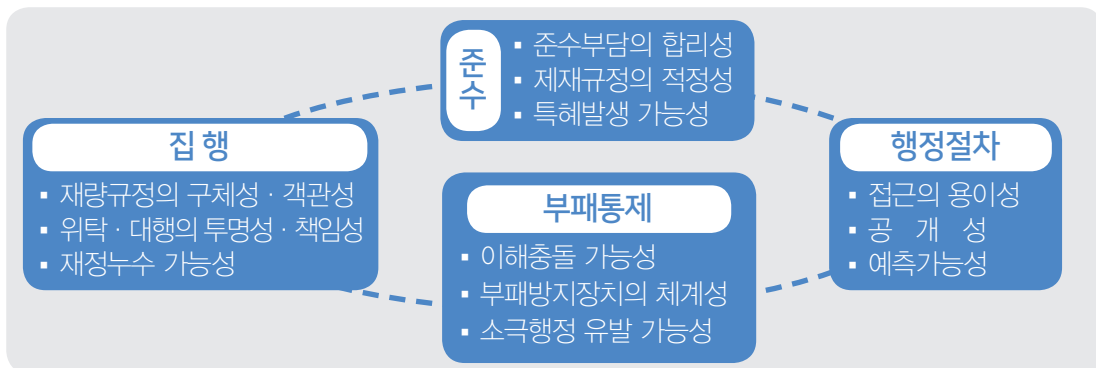


4.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2절 /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¹⁾’으로 세분화됨



1)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의 변화된 인식에 맞추어 당초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



1.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관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의 용 이 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 개 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 측 가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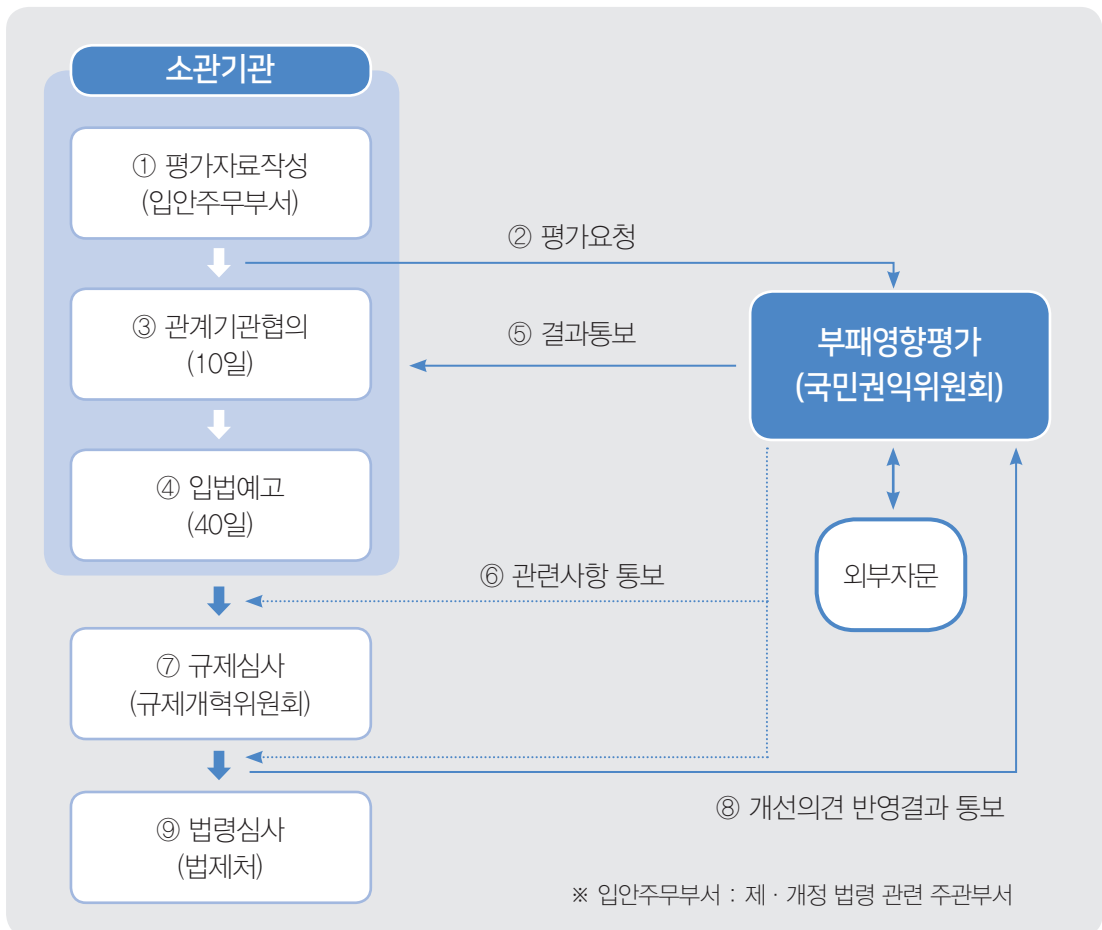


4.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 해 총 돌 가 능 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 패 방 지 장 치 의 체 계 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 극 행 정 유 발 가 능 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3절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 평가 제외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 관리 관련법령
 -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부패영향평가지침 제3조의 2 참조), 부패영향분석과-1125(2016. 4. 11.)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첨부('20 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참조)
- 제정법령(안)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첨부('20 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29 참조)

●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 부 개 정 법 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 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 정 · 전 부 개 정 법 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의견 제출

4절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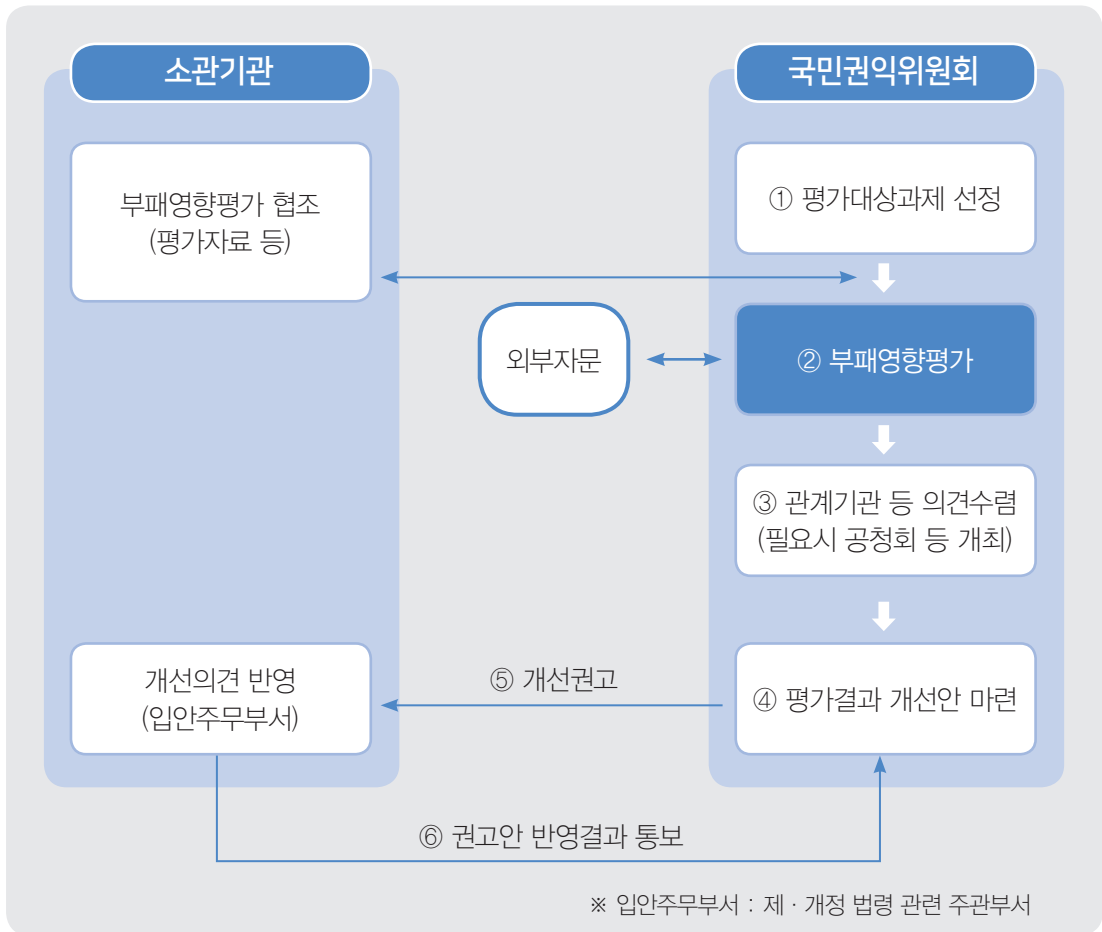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과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법령 등의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법령 등의 소관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 ·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 · 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지 기 ·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5절 / '19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내용



1. '19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9년도에는 총 1,64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에 대하여 335건의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였다. 특히,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분양가 심사회의를 대한 비공개사유를 제한적·구체적으로 운영하여 심사결과의 공개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이슈분야 법령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로 시의성 있는 개선권고 의견을 도출하는데 평가역량을 집중하였다.

중점 개선권고 분야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화 (101건, 30.1%)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67건, 20.0%)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등은 당연히 취소하는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또한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농·축·수협 회원조합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총 1,644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이 중 113개의 법령안에서 33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 수를 기준으로 한 기관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 평가요청 상위 부처는 국토교통부(214개), 보건복지부(166개), 환경부(107개) 등 순이며, 개선권고 통보 법령 수는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 등 19개),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11개), 교육부(초·중등 교육법 등 8개) 등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체육단체의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미비,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및 통제 미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등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각 지자체 조례 등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축·수협 지역 조합장 관련 부정선거 등 각종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농·축·수협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합장 주관 이사회에서 조합장 퇴직금 의결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회원조합에 대한 특혜 및 실적 과시용 자금 배정,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관리부실 등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협 사규 등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대한 각 기관 실무자의 부패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자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운영하였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총 113개 법령안에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1,64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중 1,531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13개의 법령안에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접수 · 처리 현황 ('19. 1. 1.~12. 31.)]

접수 · 평가	평가결과 통보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권고건수
1,644개 법령	1,531개 법령	113개 법령	335건

나.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기준별로는 4개의 평가분야 중 집행분야(122건, 36.4%)에서 개선권고가 가장 많았고, 11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101건, 30.1%), 이해충돌 가능성(67건, 20.0%), 제재규정의 적정성(54건, 16.1%) 등 순으로 개선권고가 도출되었다.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113개 법령 335건)]

평가분야	평가기준	개선의견 건수
준수 (69건)	준수부담의 합리성	8
	제재규정의 적정성	54
	특혜발생 가능성	7
집행 (122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01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17
	재정누수 가능성	4
행정절차 (69건)	접근성의 용이성	23
	공개성	22
	예측 가능성	24
부패통제 (75건)	이해충돌 가능성	67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
합 계		335

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별(1,644개)로는 산업개발 관련(472개, 28.7%), 환경보건 관련(372개, 22.6%), 일반행정 관련(221개, 13.4%) 법령이 많았고, 개선법령별(113개)로는 산업개발 관련(42개, 37.2%), 환경보건 관련(26개, 23.0%), 교육문화 관련(15개, 13.3%) 법령 순으로 개선권고가 많이 도출되었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9. 1. 1.~12. 31.)]

법령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법령(개)		1,644	221	181	102	175	472	53	372	64	4
개선권고 법령(개)		113	12	15	—	5	42	6	26	7	—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 체육회 등의 보조금 횡령 등 부패문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18년 기준 17개 시·도 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 : 약 3,700억 원 규모

** '18년 기준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 : 약 750억 원 규모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도 체육회 등은 전적으로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임에도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약한 실정으로 체육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후원금 유용, 채용 비리 등 부패문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회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전국 시·도(시·군·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미비,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및 통제 미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등 아래와 같은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되었다.

①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미비

- ▶ 운영비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 규정 미비
- ▶ 운영비의 관례적 예산 편성지원에 따른 재정누수 가능성 및 부당집행 발생
- ▶ 체육회 사무실 무상사용 등 특혜 발생

②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및 통제 미비

-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미비로 투명성 및 책임성 결여
- ▶ 체육진흥 보조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흡

③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 ▶ 임의단체로 운영,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곤란 및 법적 책임성 미흡
-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④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미흡

- ▶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원채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채용비리 발생
- ▶ 임직원의 기업후원금이나 기부금 횡령 및 사적유용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이에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도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4.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농·축협 조합장의 불법선거 등 위법·부당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축협 및 수협 단위조합 임직원의 공금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각종 이권을 결정하는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제공, 허위서류·위장전입 등 불법선거가 횡행함에 따라, 지역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카르텔형 부패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축·수협 회원조합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수협 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장 주관 이사회에서 조합장 퇴직금 의결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회원조합에 대한 특혜 및 실적 과시용 자금 배정,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관리부실 등 아래와 같은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되었다.

① 조합장 주관 이사회에서 조합장 퇴직금 의결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 ▶ 중앙회 제시 퇴임 조합장의 공로금 지급 비율(모범안)을 회원조합 이사회 의결로 임의 변경하여 퇴직공로금 과다 지급
-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 규정 등 관련근거 없는 '보로금' 등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부당지급

② 회원조합에 대한 특혜 및 실적 과시용 자금 배정

- ▶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이자보전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 ▶ 농협 조합 상호지원자금을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는 조합에 특혜 배분

③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관리부실

- ▶ 당연 탈퇴 대상 무자격자 조합원을 이사회에서 탈퇴시키지 않고 허위서류 등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

이에 농·축·수협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직 공로금 지급 제한, ▲회원조합 자금배정의 투명성 제고, ▲무자격 조합원 배제 등 관리책임 강화 등 농·축·수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기관별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공직유관단체가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한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로 운영하여 기관 내 법무·감사담당 부서와 사규 입안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내 광범위한 부패유발요인의 적극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기준별 사례 목차

평가 항목	평가기준	주요 검토 내용	사례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선박법 시행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특혜 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인권보호수사규칙 • 유아교육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위탁 ·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관한 및 사무의 위탁 · 대행 시 위탁 · 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집행	재정 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수산업법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법 시행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 한지 여부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1. 준수

>>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 · 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 · 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사례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공공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최초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수관리비 규모는 해당 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연관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략)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019. 4. 30 개정,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2018. 4. 18. 이해찬 의원 등 14인)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황)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선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관리비선수금을 징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에치금)

- (사용용도) 최초 관리비 납부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입주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에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 반환
- (납부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예치금 징구

■ (내용)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선수금을 부담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에치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선수관리비 부담주체가 상이하여, 제도운영에 따른 임차인 부담의 합리성 결여
 -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수관리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 국토교통위 심사보고서(2019. 4월)

■ 개정안의 발의 취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에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략) 관리비에치금과 동일한 성격의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예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선수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제도 운영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간 관리비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등 제도운영의 형평성 결여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0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사례 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평가대상 조문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작품명		작품번호 :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학력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학력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학력		
출품 내용	구분	[]개인 []팀	자격 []학생 []교원 []일반
	출품부문	◇과학작품대회 ◇지도논문연구대회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작품요지	별첨(작품요약서 A4 1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품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자 (서명 또는 인)

출품자 (서명 또는 인)

지도교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도교원 인적사항 1부(학생작품만 해당합니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만 해당합니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만 해당합니다)
------	--

〈 서식 이하 생략 〉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 황

- 개정령안은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서식 중 출품내용 및 구비서류 관련 사항 등 변경

문 제 점

-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서식에서 요구하는 출품자 사진 규격이 공무원 응시원서 등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과 달라 별도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 및 불편초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4.5)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5-341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2015. 9. 21.)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서식에서 요구하는 출품자 사진 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 개선(별지 제1호 서식)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원서

작품명		작품번호 :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출품자	성명 (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출품 내용	구분	[]개인 []팀 자격 []학생 []교원 []일반	
	출품부문	◇ 과학작품대회 ◇ 지도논문연구대회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작품요지	별첨(작품요약서 A4 1매)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품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자	(서명 또는 인)
		출품자	(서명 또는 인)
		지도교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도교원 인적사항 1부(학생작품만 해당합니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만 해당합니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그 밖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팀출품인 경우에는 출품자 모두 다 기록합니다.
3. 면담심사 시에는 출품자 전원이 출석해야 하며, 팀출품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법평가 대상인 법령, 자치법규 등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사례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75조의2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3호	지정취소			
4. ~ 6. (생략)					

비고: (생략)

평가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그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취소처분은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문 제 점

- 지정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감경 허용
 - 「철도안전법」(이하 “법”)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지정의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 개정안은 법에 따라 지정의 당연취소사유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고도 업무정지로의 처분감경을 위한 부정청탁을 하는 등의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검 토 결 과 : 개 선 권 고

- 지정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감경기준 삭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일부개정]

[별표 18] <신설 2019. 6.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75조의1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8조의1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13 제3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례 2

선박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2] 개별기준(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50(소형선박은 10) 50만원에다가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은 150만원(소형선박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평가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선박법」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이에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박법을 개정('18. 12. 31.)하고,
 -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별표에서 금액 등을 규정

문제점

- 선박법의 ‘선박’은 등록의무 위반 시 취미·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 등록의무 위반보다 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 선박법의 의무 위반 시 제재수준(과태료 상한액의 25% 부과)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제재수준(과태료 상한액의 40%부과)보다 낮아 법령위반 등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서도 최소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을 설정토록 규정(2019. 02. 12.)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적절한 제재수준 확보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법령 개정

선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별표]〈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2항제1호			
1)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80 (소형선박은 20)	

2) 등록신청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80만원(소형선박은 20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150만원(소형선박은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소형선박은 40만원)으로 한다.		
나. 선박소유자(소형선박의 소유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10 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60	120	180
다. 선장(소형선박의 선장은 제외한다)이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00	150	200
라. 선박소유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마.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바. 선박소유자가 법 제13조제 4항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5호	60 (소형선박은 20)	120 (소형선박은 50)	180 (소형선박은 70)
사. 선박소유자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60 (소형선박은 20)	120 (소형선박은 50)	180 (소형선박은 70)
아. 선박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7호	80 (소형선박은 20)	140 (소형선박은 60)	200 (소형선박은 80)

사례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승인취소)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 중소기업자 및 사업전환 용어에 대한 정의
2.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의 범위
3.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4.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5.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평가대상 조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당연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법에서 당연취소사유로 규정된 조항을 행정규칙에서 임의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법에 저촉
 -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승인취소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승인취소 여부를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4조제1항제1호를 당연취소사유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4조(승인취소)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④ (생략)

- ⑤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연관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3. 26.개정, '19. 9. 27.시행)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제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목적 (법률 제25조의2 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
지정대상 (법률 제25조의2 ①)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각종 학교 3.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지정요건 (시행령 제14조의2 ③)	지정대상 중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사업목표 및 계획이 지정목적에 부합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 구비 3.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능력 보유 4. 미세먼지 분야 조사·연구·교육 실적 보유
운영비 보조 (법률 제25조의2 ②)	국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행정처분 (법률 제25조의2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처분 가능

- 개정안(시행규칙)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문 제 점

-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 우려
 - － 법률(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 가능

[행정처분 사유별 행정처분 가능 현황]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	비고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1~3. 근거 : 법률 제25조의2 제3항 4~5. 근거 :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3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3. 지원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연구관리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정취소 처분을 할 건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건지(업무정지 기간을 몇 개월로 할 건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있어, 이해관계자들(행정처분 대상 연구센터 등)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일부개정]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별표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9조의4제1항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1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마.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제2호	지정 취소			

비고: 라목의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사례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표1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건축물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 9. (생략)

평가기준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개정, 2019. 11. 28. 시행)」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 신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이 중 개정안 제51조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 혁신지구계획의 고시일 등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 혁신지구 내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3항),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제5항)

문제점

- 협의를 통한 건축물 양도자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기준(요건, 면적한도 등)이 없어, 과도한 혜택 부여 우려
 - 개정안 제51조제5항에서는 공공용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 공익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사유 규정
 - 특히,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 수의계약 공급 요건, 면적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하는 자’에게는 제한 없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어, 협의 양도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발생 우려
- * 혁신지구 내 건축물 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건축물을 주변시세 이하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 받고 있어, 토지 수의공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공급요건, 한도 등) 필요

◆ 「도시재생법 시행령」과 법률체계를 유사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협의 양도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공급 및 면적기준’에 따라 수의공급

【참고】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공급기준	공급면적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개발구역 내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공고일 이전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함)	1세대당 1필지 기준, 1필지당 165㎡이상 330㎡ 이하 범위 내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고일 현재 소유한 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 등	산식에 따른 면적 범위 내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토지면적 - 주택건설사업 소유 토지면적×(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면적/지구 총면적)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한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기준(공급대상, 면적 등) 마련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별표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 (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frac{\text{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text{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times \frac{\text{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text{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사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① 영 제92조 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평가기준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담합한 자와 뇌물제공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18. 1.)
-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92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은 [별표 2]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배제 대상자(개정안)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법 제31조제1항제2호)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법 제31조제1항제7호)

문제점

- 경감사유인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재량에 따라 경감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고,
 -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자의적 경감과 부정청탁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특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가능성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대기업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경감을 받아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회공헌 등을 약속하고,
 - 자치단체장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경감해 주는 등 특혜발생 가능성

시민단체, 000전 시장 등 검찰 고발 예정 (거제인터넷신문 '18.6.)

- 현대산업개발은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총사업량 6.2km중 5.4km는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시로부터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건으로 입찰참여 제한 5개월 처분을 받음
- 이후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70억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줌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1조원 상당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는 000★★시장과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

[부정당업자 제재 주요 경감사유]

처분기관	주요 경감 사유
A광역시	① 침체된 건설 경기 및 지역경제 고려 ②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B시	① 전 대표 재직 시 뇌물제공 ② 지역인재 고용, 지역 공헌도 ③ 시일이 과도한 경과 ④ 금액이 적고 지인에게 인사차 준 것
C시	① 지역업체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②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선 감경원인 불명확

※ '17. 권익위 실태조사 (제도개선)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경감기준인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를 고려하여’로 개선
 - ※ 국가계약법의 경우 입찰관련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계약법의 경우 입찰과 관련이 없는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로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집행

>>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개요

- 행정의 전문화 · 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 · 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 · 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사례 1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이유

-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국가작용이나, 동시에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하여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중인 「인권 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제고하고
 - 심야조사·장기간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피해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그간 수사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평가대상 조문

제57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정해진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제정안은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문제점

- 피해자등이 받을 수 있는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한 구체성 미흡
 - 제정안은 신변 보호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유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담당 검사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될 위험성 발생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동종·유사 사건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 보호 조치가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조치 기준 명확화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개선권고 각 1건)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서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961호, 2019. 10. 31., 제정]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례 2

유아교육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다.

라. 차등적 재정지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2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마.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u>차등적 재정지원</u>	<u>차등적 재정지원</u>	<u>차등적 재정지원</u>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유치원이 유치원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비 인상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문제점

-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 불명확
 -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 미비
 -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 미흡
 -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시 개별처분기준을 1차, 2차, 3차 위반 모두 ‘차등적 재정지원’으로 규정
 -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3차 위반자가 1차 위반자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구체화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등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처분의 가중 기준 구체화
 -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등 행정처분의 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지도록 규정할 경우 위반 횟수와 감액 수준이 비례토록 하는 등 기준 명확화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2호, 2020. 9. 22., 일부개정]

[별표 1의2] <개정 2020. 7. 28.>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3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 자. (생략)

사례 3

노인복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2]

과태료의 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 제1항제2호	150	300	500
나. 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법 제61조의2 제1항제3호	150	300	500
사.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법 제61조의2 제3항제3호	100	150	200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개정령안은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노인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일반기준 1호의 나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호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과태료 금액을 2분의1에서 감경 가능
- 일반기준 다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가능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비교적 구체적으로 감경대상을 정한 것과는 달리, 가중기준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
 -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행정처분의 가중 여부 결정에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행정처분의 가중을 회피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가 발생될 가능성

외부전문가 의견 (법제연구원 김OO 연구위원 등)

-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부과에 있어, 규정된 위반행위별 금액을 더욱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과태료 가중에 행정청(공무원)이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 가중을 회피하기 위한 부패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해도, 부패방지적 관점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것은 명백
- 다만,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세부적 행위기준은 개별 법령의 위반행위 행태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하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를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노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2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 1)과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일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지방계약제도 발전 및 업무 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제4항 제1호	지정 취소	300	500
나. 제1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9조제4항 제2호	시정 명령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이 하 생 략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또는 계약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법 제39조, 제123조의2)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역할 : 지방계약업무에 관한 교육·연구·자문 (시행령 제123조의2)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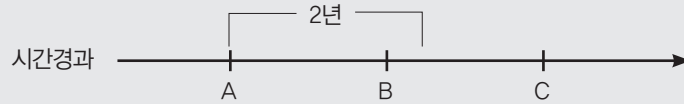
- 추상적·포괄적인 감경기준 운영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 ‘지방계약제도 발전 및 업무 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자의적 감경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등 보다 합리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참고) 감사원 감사결과 : 금융기관 제재 부적정 (‘17.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경사유를 ‘위법·부당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타 법령상 전문기관 제재 유형 등을 분석하여 위반행위의 제재양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부득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개념의 범위나 예시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용기간 및 기준 부재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 (예시) 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를 규정
 - 최근 몇 년간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지와 처분의 기준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 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 가중처분 회피를 위해, 적용기간을 늘리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재적발일’이 아닌 ‘처분일’을 행정처분의기준으로 적용하려는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참고설명]



A : 최초 부과처분 한 날(1차 처분일)

B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2차 위반행위 적발일)

C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날(2차 처분일)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1차 부과처분일(A) 이후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시점이 '적발일(B)'인지 '처분일(C)'인지에 따라 가중처분의 유무가 결정됨
→ 2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2년이 지난 후 2차 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인 '지방계약제도 발전 및 업무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
→ (예시)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지방계약제도 발전 및 업무수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 및 적용기준 신설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별표] <신설 2019. 6. 25.>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23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제4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9조제4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9조제4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사례 5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부담금의 납부 등)

-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생산 전력량의 변경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15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원자력 진흥법 제13조)
 - *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부과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개요

- ① 부과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② 납부의무자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한국수력원자력)
- ③ 부과기준 :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 × 킬로와트시간당 1.2원
- ④ 납부금액 : 연간 2,000억원 내외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납부금액	1,665	1877	1960	1960	1912

- ⑤ 납부방법 : 분기마다 서면으로 고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 계정으로 납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는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진흥법에는 부담금의 환급·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부재
 - ※ 환급방법·절차 및 권리구제에 관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미부합('18년도 부담금운영평가 결과, 기재부 주관)
- 개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와 부담금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자력진흥법의 부담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추가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문제점

- 부담금 조정 사유를 '생산 전력량의 변경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결정함에 있어 부과기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 우려
 - 또한 부담금 조정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납부의무자와 부담금 징수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참고) 부담금 부과 및 환급 관련 언론사례

- **경유차 부담금 과다 징수한 창원시 행정** ('18. 4. 언론보도)
 - 창원시가 수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다 징수하여 수 억원을 환급해야 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
- **법령 미비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에 직면** ('19. 6. 언론보도)
 - 전국 19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법령 미비로 잘못 부과해,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내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과금의 조정(추가징수 또는 환급)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4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례 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및 기간)

-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정 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의3 관련)

위반행위	해당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 제3호			
가.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1) 인력 기준 또는 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3개월 이내		
2) 장비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이내		
나.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2.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의6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			
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도』 입법경과

-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안전한 작업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문성 부족,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 위협

* 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1,227개 학교 중 201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검출

- 이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등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 12. 24.시행)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여야 함(제30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30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취소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 석면 잔재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고, 미흡한 감리인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개정안(시행령)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가능하도록 함

문제점

① 행정처분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 우려

- 개정안(제42조의3제2항)에 의거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간의 1/2범위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하나,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열거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가중·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② 시정명령 기간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허용 및 예측가능성 저하

- 개정안(별표 3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환경부 평가결과 기준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을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이행기간 확보를 위한 피처분자의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로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가능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등록기준 중 인력 또는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3개월이내)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이내)		
환경부 평가결과 기준이하(미흡등급, 60점 미만)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 기간 등 규정화되지 않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경부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기간을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사례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44의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2호	<u>효력 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4.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3호	<u>효력 정지 18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u>효력 정지 9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u>효력 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5.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3호	<u>효력 정지 18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u>효력 정지 9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u>효력 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가.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나.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7.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5호, 법 제131조, 법 제57조 제1항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u>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u>3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8.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6호, 법 제131조, 법 제57조 제2항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 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 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u>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u>3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9.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u>3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 증명 취소</u>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125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법 제125조)
- 개정안 [별표 44의2]는 법 제125조에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

문제점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두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과 특혜발생 가능성
 - ‘효력 정지 180일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형식으로 처분권자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할 가능성

[예 시]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2호	<u>효력 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4.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25조 제2항제3호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u>효력 정지 18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u>효력 정지 9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u>효력 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u>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자의적인 처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

❖ 개선이 필요한 규정

- ① 행정처분기준 3.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효력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② 행정처분기준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가. 사망자 발생 시 효력정지 18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나. 중상자 발생 시 효력정지 9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다. 중상자 외 부상자 발생 시 효력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③ 행정처분기준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가.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효력정지 18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효력정지 9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다.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효력정지 30일 이상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④ 행정처분기준 7.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
 - 가.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3차 위반 시 효력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⑤ 행정처분기준 8. 비행하는 동안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시 효력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3차 위반 시 효력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 ⑥ 행정처분기준 9.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3차 위반 시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조종자증명 취소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30호, 2020. 5. 27., 일부개정]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1호	조종자증명 취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2호	가. <u>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30일</u> 나. <u>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50일</u> 다. <u>벌금 200만원 이상 : 조종증명 취소</u>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3호	<u>조종자증명 취소</u> <u>효력 정지 90일</u> <u>효력 정지 30일</u>
4.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3호	<u>효력 정지 180일</u>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나.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u>효력 정지 90일</u>
다.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u>효력 정지 30일</u>
5.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u>효력 정지 180일</u>
6.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5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u>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u>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7.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6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u>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u>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u>효력 정지 180일</u>
8. 법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u>효력 정지 180일</u>
9.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25조제2항제8호	조종자증명 취소

비고

1. 처분의 구분

- 가. 조종자증명 취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효력 정지: 일정기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할 수 있는 경우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과거 효력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1조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센터업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접수·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조치 요구,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개정안은 신고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한국감정원)을 지정하는 등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확인·설명과 근거자료 제시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500만 원)에 비해 한 가지 의무만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400만 원)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감액(400→250만 원)

문제점

- 과태료 가중·감경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및 판단 우려
 - 개정안 제38조(별표2)에 의거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하나,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우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금지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체납자에게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바,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한 체납자의 부당 청탁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일반기준에 규정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
- 과태료 일반기준에 규정된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20. 8. 21.>

과태료 부과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5조(과징금) ①~③ 생략

④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과징금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문제점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우려
 - 과징금 납부기간 유예 사유가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및 납부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40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5조(과징금)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중대한 재해·재난을 겪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례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 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 · 감독하는 감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임
- 한편,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자본금은 기준금액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수리업 등록 예정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을 확대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제12조)]

현 행	개정안
① 문화재수립협회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u>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 서울보증보험</u>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추 가〉	① (좌 동) ② (좌 동) ③ <u>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u> ④ (좌동) ⑤ <u>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u>

문 제 점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이 모호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 개정안은 문화재수리업 등록예정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본금 확인서’ 발급 기관을 확대하면서, 발급기관으로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 하였으나,
 -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확인서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등록요건 인정에 대한 일관성 ·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을 고시하는 등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 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 5. (생략)

사례 11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소음 · 진동관리법』 개정 (법률 제158354호, 2018. 10. 16. 공포, 2020. 1. 1. 시행)

-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마련

[소음 · 진동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도입 (제33조의2)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 · 수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를 제작 · 수입해야 함 ② 제작 · 수입자는 타이어가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자가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③ 제작 · 수입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타이어에 표시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소음허용기준 위반 제작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의2)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타이어 제작·수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음 ② 제작·수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이어 제작, 수입 등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제60조)	①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라 타이어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차수별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문제점

- 과태료 감경 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 우려
 - 개정안(제15조, 별표2)에 의거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 감경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열거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우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금지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바,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한 피처분자의 불법적인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1의4]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 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 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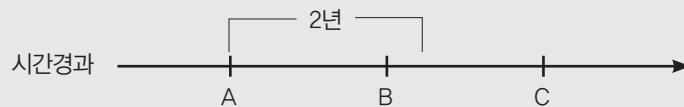
현 황

-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방역 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를 운영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및 방제기준 미준수 등 위법 · 부당행위를 할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5조의3)
- 개정안은 법 제5조의3에 규정된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위법 ·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

문제점

-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규정 부재로 자의적 처분 가능성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 처분의 기준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 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가중처분 회피를 위해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재적발일’이 아닌 ‘처분일’을 행정처분의기준으로 적용하려는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 ※ (예시) 시설 · 장비 ·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과 위반행위 적용기간(최근 1년간)은 있으나, 적용기준이 없음

[참고설명]



A : 최초 부과처분 한 날(1차 처분일)

B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2차 위반행위 적발일)

C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날(2차 처분일)

-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1차 부과처분일(A) 이후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시점이 ‘적발일’(B)인지 ‘처분일’(C)인지에 따라 가중처분의 유무가 결정됨 → 2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2년이 지난 후 2차 처분을 받게 되면 가중처분을 회피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준 마련
 -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는 단서 신설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5]

행정처분 기준 (제7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 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 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생략)

>>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조의2(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 지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 여부에 대한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창업 지원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처분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가기준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현 황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지원기관 지정 ·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 개정령안은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의2)
 - － [별표 1]에서 조직, 인력, 시설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
 - － 지정기간 3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재지정신청 관련 절차, 시정명령, 지정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 ※ '19년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현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85억), 농업정책보험금융원(6억 6천만 원), 벤처기업협회(3억)

문제점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 지정 취소 시 공개규정 부재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시 농식품부 및 해당 창업 지원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 지정취소 시 공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취소 후에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식품 벤처 · 창업기업이 지원신청을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 부재
 - 창업 지원기관은 농식품 벤처 ·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 창업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6조의2)
 - 농식품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또는 보고 의무 등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규정이 부재하여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업무가 부실해 질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 지정 취소 시 공개규정 마련
-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장치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78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12조의2(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 농식품 벤처 ·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2

교육공무원임용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른다.
- ③ ~ ④ (생략)

평가기준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현 황

- 개정안은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을 시험실시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

문제점

- 교원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구체성 미흡
 - 교원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외부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교원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기관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024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례 3

습지보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2(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습지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3. 법 제8조에 따른 습지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훼손습지의 생태계 변화상황 관찰 및 훼손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습지 인벤토리 작성 및 습지조사 자료 등 국가습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7.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습지생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기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 황

- 개정안은 습지생태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 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마련

* 환경부 직제 개정(2019. 5. 7. 시행)에 따라 습지생태원 조사·연구 기능 등을 담당하던 국립 환경과학원의 국립습지센터가 폐지되고, 그 조직 및 기능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

문제점

- ① 위탁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탁기관의 무분별한 사무위탁 가능
 - 개정안(제18조의2 제8호)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무가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예산낭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②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 사무위탁 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무분별한 위탁방지를 위해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 (1안) 포괄적인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거나, (2안)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고시하도록 개선
- 위탁사무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72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 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 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연관 조문】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② (생략)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평가기준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560호, 2019. 8. 27., 개정 · 시행)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개요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역할

- (스마트기술 활성화)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연계기술과 시장 동향의 조사·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화 기반을 조성
 - 관·산·학·연을 잇는 스마트 기술의 허브 기능 수행
- (창업 지원) 건설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기술·법률·경영·자금 등)를 맞춤형 지원
 - 특히, 아이디어가 검증을 거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제공

■ 추진 현황 및 계획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중('18.~), '19년 정부예산(8억원) 반영
- '18년까지 지원센터에 창업기업 15개사가 입주 중이며, 단계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20년까지 40개 기업 입주 추진

- 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수탁기관,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문제점

- 출연금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가능성 발생
 - 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운영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수탁기관에게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설정·관리할 의무와 업무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무는 부여하고 있음에도, 수탁기관이 출연금을 부정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음

* 스마트건설기술 정책개발, 시책 수립·시행, 연구·개발,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 조사·분석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와 입법체계가 유사한 ‘국가건설기준센터’와 관련된 규정에서도 출연금 환수규정이 없어,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 환수 규정 마련
-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대한 출연금 환수 규정 마련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개 정 안	개선 의견(예시)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② (생략)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② (생략)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② (생략)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유사 입법례》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사용)

-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사례 2

발명진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감독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전문기관과 금융회사 등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기관과 금융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기준

재정누수 가능성

현 황

- 「발명진흥법」 개정(법률 제16361호, 2018.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근거 마련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 활용 사업 개요

- (목적) 은행이 보유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정부 · 은행의 재원으로 매입하여 회수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기술집약형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여전히 기술집약형 혁신기업은 자금 조달 곤란(중소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4%)

- (추진경과) '13년부터 지식재산 금융을 본격 시작하였으나 부실발생 시 담보물 매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에 어려움

–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담보 산재권 매입 · 활용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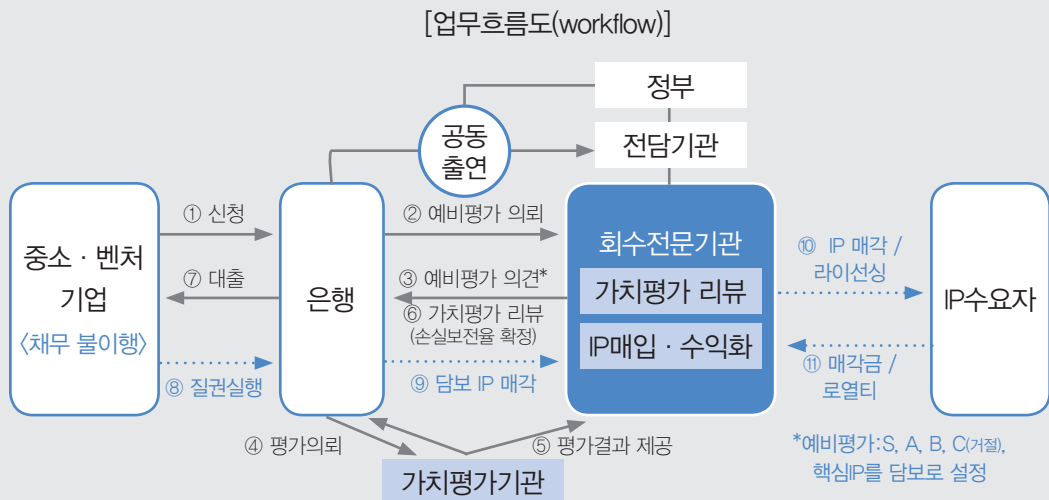
* 법률안 발의('18. 9., 권철승 의원)→국회통과('19. 4.)→개정법 시행('19. 10.)

- (사업내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등 추진

– (담보 매입)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 실시, 이후 부실발생 시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

– (수익화) 사업단위별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매각 · 실시권 허락(라이선싱)을 추진하고, 그 수익(일부)을 출연계정에 충당

– (컨설팅) 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 · 중견기업에게 국내외 전략특허 확보 전략 및 지식재산 가치증대(value-up) 컨설팅



- 개정안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방식, 조건 등 매입에 관한 사항과 전담기관 감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문제점

- 출연금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가능성 발생
 -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담보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담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선정하여 운영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 * 담보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특허청장의 고시에 따라 선정한 산업재산권 거래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전담기관에서 운영비용 지원)
 - 전담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운영자금을 부정·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출연금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음

관련보도

- “산업부 산하 5개 기관, 유령학회와 거래로 530억 낭비” (’18.10. 22. 뉴시스, 내일신문 등)
 - 산업부 산하 5개 기관이 돈만 내면 논문 실어주고 발표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2억 3천만원의 출장비를 사용. 이중 연구비로 지원한 정부 출연금은 5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환수 규정 마련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개 정 안	개선의견(예시)
제14조의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감독 등) ①~⑥ (생략)	제14조의4(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감독 등) ①~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특허청장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⑧ 특허청장은 제7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의 사업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제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제품 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행정절차

>>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사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접근의 용이성

현 황

검토배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출결사항(出缺事項)을 부정하게 관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검토

*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프로그램

-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등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법 제39조 제4항 제1호)
- (운영기관 지정 취소)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운영기관 지정 취소 가능(영 제50조 제3항 각호)
 - 한편, 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기관은 지정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 하더라도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까지는 지정 결정 불가(영 제49조 제2항 제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 6. (생략)

문제점

- 운영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가·지자체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까지는 운영기관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 처분 전에 충분한 소명기회의 보장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분상대방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

❑ 「법령 입안 · 심사 기준」(법제처, '12. 12.~3. 1.) (p. 430~431)

- 청문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 취소 시 청문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례 2

수산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4조(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접근의 용이성

현 황

- 위판장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 규정 정비 (안 제44조)
 - 현행 시행령상의 “위판장 지정의 취소”를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로 변경

문제점

-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 미비
 -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 대한 지정취소는 행정청이 부여한 자격, 권한 등을 박탈하여 해당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기관 등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청문절차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취소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문절차 규정 마련

(참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 청문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청문 규정

개 정 안	개선의견(예시)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4. 제58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6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신설〉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현행과 같음 제95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4. 제58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6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1조제1항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 유사 입법례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 1. 6.>
- ② 삭제 <2016. 1. 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포장재 제조기술로 재질·구조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2.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연관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준

접근의 용이성

현 황

-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개정, 2019. 12. 25. 시행)」 개정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제9조의3)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의2의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1년 범위 내)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을 명할 수 있음(제9조의 4)
- 환경부장관은 불가피한 경우 위 중단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9조의5)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중단 명령을 받아야 하는 ‘포장재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중단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현 포장재 제조기술의 한계로 개선 불가, 국민건강 등에 지장 우려 등(개정안 제7조의2)

문제점

-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청문절차가 없어, 행정상 제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미흡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포장재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중단 명령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 이해관계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제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미흡

※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품질기준을 위반한 고형 연료제품에 대해 수입·제조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38조의2에 의거 청문 실시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법률 개정사항 〉 * 추후 개정

-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중단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법령안 예시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법률 개정

현 행	개선의견(예시)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제38조의2(청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제9조의5의제1항에 따라 중단명령에 같음하여 과징금 부과)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 입법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 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 <2014. 12. 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사례 4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교원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의3(교원자격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교원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의3(교원자격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평가기준

접근의 용이성

현황

- 개정안은 교원자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소하도록 규정

문제점

- 교원자격증 취소에 대해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미흡
 - 자격증 취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행정청이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자격증 취소 처분에 대해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마련

〔 법령안 예시 〕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선대상	개선의견
▶ 초·중등교육법 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관할청이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
▶ 유아교육법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관할청이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 유사 입법례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93호, 시행 2018. 8. 22.)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⑦ (생략)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4.~ 5. (생략)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270호, 시행 2019. 7. 1.)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생략)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시행 2019. 2. 4.)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 6. (생략)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8.~ 11. (생략)
- ②~⑤ (생략)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 2) 공개성

개 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사례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절차와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①~⑤ 생략

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①~⑥ 생략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황

- 제정령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절차와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안 제12조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안 제13조제6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행정의 공개성 저하(안 제14조제7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절차와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선
-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선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사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방법, 착오지원에 관한 총당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 황

-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의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방법, 착오지원에 관한 총당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신설 (안 제28조의4 제1항)

문제점

-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개성 부족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에게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사업주에게 공개하는 방안 마련 (안 제28조의4 제2항)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7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3

주택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평가기준

공개성

현 황

-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안전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 (공개내용)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상정안 및 심의 결과,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 (공개방법) 심의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 (비공개 사항) ①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관련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항

문제점

- 포괄적인 비공개 사유로 인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저해
 -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임에도,
 -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비공개 회의사항에 대한 판단권한이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 *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 비공개 사유나 비공개 기한도 공개하지 않는 등(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비공개 기한이 도래하면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음) 분양가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보도

■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 (‘19. 7. 15. 한겨레신문)

- 정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비공개 조건을 달아 놓은 것으로 확인, 공개여부와 범위까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분양가 심사 투명화가 ‘알맹이’ 없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도 비공개 대상으로, 회의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

■ 정동영 의원 “국토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시행령 수정해야” (‘19. 7. 14. 전북일보)

- 정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
- “전주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 위촉하는 등 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수정 보완을 촉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1안)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2안)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6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4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 황

개정이유

-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법률 제15788호, '18. 10. 16. 개정, '19. 04. 17. 시행)
 - * 한국국제협력단은 ODA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정부출연금 증가로 인해 '16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변경됨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임이사 후보 추천절차 신설 등 준정부기관 변경지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

- 개정안은 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은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문제점

-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미흡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나,

- 개정안은 이를 “협력단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자의적인 방침 등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4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사례 5

갯벌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갯벌휴식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 기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관리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관리구역의 구분
3.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관리구역 및 세부구역별 위치·면적 및 범위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5.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6.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관리구역 내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8. 관리구역 내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9. 관리구역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유수면 매립,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해양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3조제1항의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⑥ 시·도지사가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⑦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황

- 동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는 법 제10조 7항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관보 고치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안) 제14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시에는 관보 고시 규정이 없음

문제점

-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하는 바,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정·해제 등의 사항은 고시를 통해 공개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국가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생태마을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 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생태마을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이하 “지방생태마을”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생태마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생태마을”은 “지방생태마을”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 ⑦ 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그 밖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8(처방전 서식 등) ①~③ (생략)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분(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진료 연월일, 발급 연월일,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전화번호
3. 수목의 표시 :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면적), 식재년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4. 생육환경 및 관리사항 : 햇빛조건, 토양 견밀도(堅密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 사항 및 기타사항
5. 수목의 상태
6. 진단
7. 처방 : 농약의 명칭, 성분,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8.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9.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 황

- 평가대상조문은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규정
 -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 불명확
 -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알 수 없어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이해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형식인 고시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5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19조의8(진료부·처방전 등의 서식 등) ①~③ (생략)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분(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분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密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용법·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사례 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6조(취업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 ①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구직의사와 취업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공개성

현 황

- 제정안은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임
- 평가대상 조문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자격과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

- ◆ **취업취약계층 (제정안 제2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력 · 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 · 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곤란을 겪는 사람
- ◆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류 (제정안 제5조)** : 1. 취업의욕과 능력, 적성 등을 진단하기 위한 진로상담 · 직업심리검사 등의 실시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그 밖에 일경험 프로그램 및 취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빈곤 · 양육 등 관련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3. 취업을 집중적으로 알선하기 위한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그 밖에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4.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5.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6. 취업지원기간 중 취업한 경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또는 관련 지원금의 연계

문제점

-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요건 불명확
 - 취업취약계층이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취업신청 자격요건을 인정하여 지원할 가능성 상존
-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요건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부분(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대한 공개성 부족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안 제6조제1항의 요건 중 제2호(나이요건) 또는 제3호(소득요건)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2항)
 - 별도 요건을 정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규정 부재로 행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 안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규정 마련 (안 제6조제1항)
 - (예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조제1항 제2호(나이요건) 또는 제3호(소득요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 예측 가능성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사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현 황

- 창업의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운영 내용의 근거 불충분
- 개정안은 법률 제4조의5('19. 10. 24. 시행)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문제점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대상자 등의 예측가능성 저해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하나,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태조사 시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5조의5(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의 유형, 업종 및 창업기간 등 창업 전반의 현황
 2. 창업자(개인인 창업자에 한정한다)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자의 재무·자금, 인력·조직 등 창업자의 경영 실태
 4.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현 황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신고사항 또는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법 제5조의7)

※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을 하는 자 (법 제2조)

❖ 법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 :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변경신고) ①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법 제5조의6제1항제4호 :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 신청기한, 분할납부 횟수 제한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 신청 시 입증서류 등 첨부서류 관련 사항 부재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양식 및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납부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양식 및 사유를 입증할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0호, 2019. 11. 19., 전부개정]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에 한하여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합격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에 한하여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체육지도사 자격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형 종목을 제외한 종목은 실기 및 구술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고, 동계종목의 경우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특수한 시험절차로 검정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대한 예측가능성 미흡
 - 시험절차는 수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은 시험절차가 특수한 종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해당 종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 등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종목을 별표 또는 고시로 규정
- 실기 및 구술시험 후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종목을 별표 또는 고시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3호, 2020. 2. 14., 일부개정]

제6조(합격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서식

[별지 제1호의2] <신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라.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인증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평가기준

예측가능성

현 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제3조의2 및 제3조의 3을 신설하여 그에 따라 별지 서식도 신설
 - －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
 - －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은 산림청장이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별제 제1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문 제 점

- 제재에 대한 법률의 규정과 서식의 내용이 상이
 - － 법률에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에 대해 당연취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임의취소로 기재 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에 혼란 초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②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서식의 내용을 법률의 규정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 2020. 6. 4., 일부개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0. 1. 9.>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생략)

유의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 또는 통보를 하지 않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나.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 9.>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생략)

유의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 부패통제

>>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사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의9(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在)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2. 고용노동부
3. 행정안전부
4. 중소벤처기업부
5. 국토교통부
6. 그 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③~⑪ 생략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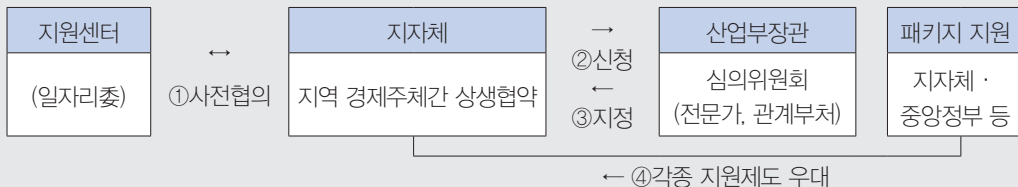
-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19. 1. 31.)을 계기로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산 필요성 제기
* 지역의 투자 촉진 및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상생형 지역일 자리의 정의, 선정 및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
* 홍의락(2.22), 송갑석(3.6), 어기구(3.8) 의원안 총 3건 발의 → 상임위 대안의결(10.2) → 법사위 통과(11.27) → 국회 본회의 부의(11.28)
-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취소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장 : 산업부장관), 심의시 고려사항, 실무위원회 등 규정
- (신청·선정) 신청서 필수 포함사항, 선정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타당성 평가, 선정 사실의 통보 등 규정
* 신청서 서식, 실사 및 타당성 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기준 등은 고시로 규정 예정
- (취소)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취소를 위한 해당 지자체장 의견청취, 취소사유의 위원회 제출, 위원회 심의 등 절차 규정
- (기타) 참여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요율 감면범위 설정(5→1%), 지원사업 추진실적 제출주기, 위원명단·회의록 공개 등 규정

〈참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제도 개요

-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지역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 으로 추진되는 사업
- (선정) ①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② 경제주체간 합의내용, ③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민·관 합동 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평가 시행
- (정부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지자체에서 기업·근로자 등에 대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공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예시 (파란색은 법 개정사항)]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 부·재정사업 투자보조금 (투자규모 일부 보조, 예 : 10%) • 공유지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허용 •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 부동산 취득세 50%이상 감면, 재산세 75% 감면(5년)	•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年 임대료 인하 : 조성원가 3→1%) • 펀드지원, 중소기업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보증료를 감면 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43~10%p) 및 한도 상향 •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장기임대(최대 50년), 수의계약 •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구분	지자체	중앙정부
근로자	•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동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예 : 3년형 3,000만원(청년600, 기업600, 정부 1,800 + 지자체 추가 지원금)	•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 산단 기숙사 · 통근버스 지원(3년) • 복합문화센터(문화 · 복지 · 편의 기능) 등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 지역 직업계고 · 전문대 맞춤형 교육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2. 21., 관계부처 합동)

문제점

- 특정위원의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존재
 -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및 취소여부 등을 심의 · 의결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나,
 - 법령상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민간위원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경우, 해당위원에 대한 지역경제주체 등의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관련분야 다른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 발생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명시

개선결과

- 권고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23호, 2020. 7. 7., 일부개정]

제15조의3(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④ (생략)

-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사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제척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학생의 보호자 등(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교원의 교원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해촉 사유 등을 규정

문제점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 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하도록

해야 하나,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 미흡

-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회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5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② (생략)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제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시행규칙은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및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문제점

-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과 관련한 주요 방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및 시험의 합격자 결정까지 심의하는 기구로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됨
 - － 시행령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고 이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0호, 2020. 8. 5., 일부개정]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생략)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례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검사인력 보유 및 기술향상
2. 타워크레인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3. 타워크레인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고층 건물 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검사수행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 개정

* '17년 남양주 사고로 3명 사망, '18년 용인 사고로 3명 사망, 4명 부상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개정안 제33조의3은 법률 제14조의2 제4항¹⁾의 위임에 따라 평가위원의 자격,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문제점

- 평가위원회는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부실검사 여부 및 검사업무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이며,
- 법률 제14조제3항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검사대행자가 기준(시설, 기술인력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등에 따른 지정 취소, 사업의 전부 및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대행자의 사업 정지 및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
-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적 중요성으로 인해 민간위원에 대한 검사대행자의 로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평가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 내포

관련보도

- **전기사업법 민간위원 연임제한 뒤 중립성 확보해야** ('15. 8. 5. 기호일보)
 -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최장 14년이나 연임하는 사례 발생. 3명은 10년 연속, 또 다른 3명은 8년 연임.

1)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위원회의 구성, 임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²⁾를 고려하면, 행정위원회법³⁾에서 요구하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기준’을 규정하여, 검사대행자와의 유착가능성을 예방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의 임기를 시행규칙에 명시
-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의 연임 가능여부 및 횟수를 시행규칙에 명시
- 부정·불법위원 등의 위원회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 마련
- 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위원들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2) 2018. 2. 6.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에서 검사 대행의 부실 여부,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위원회의 구성 또는 임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회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들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5호, 2020. 7. 1., 일부개정]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3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5

주택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4조(구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상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요건을 확대하며,
-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및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을 위해 시·군·구 등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제척·기피제도 등을 통해 심사 투명성을 확보 중이나,
 - ☞ 일부 부적정한 위원회 구성 사례* 등으로 인해 등록사업자(건설업체 등) 임직원을 위원회 구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제척사유 구체화 등 구성의 투명성 강화
 - * '18.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금호건설 임원들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됨('19. 7. 15. 한겨레, '19. 7. 7. 머니투데이, '19. 6. 24. 대한전문건설신문 등)
- ② 주택분야 교수, 토목·건축·주택분야 업무종사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분양가의 적정성 심사에 한계가 있어*,
 - * 경실련은 “최근 분양한 위례신도시 3개 단지, 한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비판('19. 5. 2. 서울파이낸스 등)
 - ☞ 건축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구비한 위원들을 통해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등에 대한 적정한 평가 등 심사의 전문성 강화
- ③ 분양가심사위원들은 회의개최 2일전부터 회의자료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 ☞ 분양가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사전검토 기간을 늘리고(2일→7일),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

❖ <참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기능)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용,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민간위원 6명 이상, 공공위원 3명으로 구성(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시·군·구청장이 지명) (파란색은 금번 개정사항)

구분	구성 및 임기
민간위원	• 위·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6명 이상 위촉(각 분야 1명 이상 포함) • 임기는 2년, 연임가능 ① 법학·경제학·부동산학·<u>건축학·건축공학</u> 등 주택분야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자 ② 변호사, 회계사, 감평가, 세무사로 1년 이상 근무자 ③ 토목·건축·<u>전기·기계</u>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u>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u>)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자 ⑤ <u>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u> (<u>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u>)

구분	구성 및 임기
공공 위원	• 3명의 위원을 임명(각 분야 1명 이상 포함) ① 국가·지자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LH·지방공사·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운영) 시·군·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소집, 위원 명단 홈페이지 공개 등
 - [분양가심사위원의 사전 검토기간 확대\(회의개최 2일전 → 7일전\)](#)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회의 의장,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둬(시·군·구청장이 지명)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가능
 - [심사위원 명단은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심의종결로부터 6개월 경과, 공개요청 有 경우 열람\), 다만,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권고 실시

문제점

-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한 등록사업자의 부정청탁 가능성 존재
 - 개정안은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을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개선하는 취지임에도,
 - 일부 퇴직한 등록사업자 임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에 따라, 퇴직 임직원에 대한 등록사업자의 부당한 청탁 등으로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부패가능성이 있음

❖ 등록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 원천배제 여부 (개정안 제64조)

분양가심사 민간위원 구성현황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원천배제 여부
①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자 ②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로 1년 이상 근무자	〈위촉가능〉 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퇴사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1년이상 재직한 자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변호사 등 자격보유)이 퇴사하고, 변호사 등 직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분양가심사 민간위원 구성현황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원천배제 여부
③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	〈원천배제〉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자	
⑤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	

● 특정위원의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존재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의 등 기능적 중요성*으로 인해 등록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욱이 개정안(제65조)은 위원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를 공개함에 따라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한 등록사업자의 불법적인 로비 가능성이 높음에도,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용,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 법령상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⁴⁾, 특정 민간위원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경우, 해당위원에 대한 등록사업자 등의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관련분야 다른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 발생

관련보도

■ SH공사의 비위행위 발생, 폐쇄적 위원회 때문” (‘18. 11. 13. 시사매거진)

- 노식래 서울시 의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내부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분석 후 문제 제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가 위원회 설치시점인 지난 2007년부터 10년이상 동일 위원이 연임하고 있다”며 “SH공사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은 비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

4)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등록사업자 임직원(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분양가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여부 및 (연임 가능 시) 연임 횟수를 관련 규정에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64조(구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지방공사
 - 다.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 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사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별 1명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 제11조의 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일부개정안 제11조의2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4. 1. 시행)」 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이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위원회 설치

문 제 점

- 개정안은 법 제11조3 제7항의 위임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의 최소 구성인원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법 제11조3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도시계획·교통·재해분야 등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청장이 위촉한 사람

** 그외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등은 관련법령에 의거 이미 위촉·구성된 위원 중 각 위원장의 추천받아 임명하는 바, 해당법령에서 임기, 연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법 제11조3 제3항)	인원	임기(연임여부)	관련법령
〈제1호〉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새만금청 고위공무원	3명	—	—
〈제1호〉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새만금청 고위공무원	5명	규정 없음	—
〈제3호〉 새만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새만금청장 추천)	3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4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장 추천)	3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가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5호〉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장 추천)	2명	민간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가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1조 (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제6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장 추천)	2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가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7호〉 전북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교육환경보호위원장 추천)	2명	민간위원 임기 3년 (연임가능)	교육환경보호법 제5조 제4항

- 특정인이 위원직에 장기적으로 재직·연임할 경우, 해당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관련분야 다른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 발생
-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없음
 - 통합계획 심의와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부정·불법위원에 대한 처벌 등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제수단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시행령에 명시
-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여부 및 횟수를 시행령에 명시
 - * 개정안 제11조2 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개정안 제11조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권고
- 추후 법률 개정 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 * 새만금사업법 제73조의3에 의거 기존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해당조문에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권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5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 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내용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사례 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물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물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평가기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 황

-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법률 제1565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제정
- 개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25조를 통해 물관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를 마련하고 있음

문제점

- 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 개정안 제2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규정 외 특정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비위행위 및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참여를 배제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정·불법위원 등의 위원회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 마련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해촉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례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⑤ 제척·기피·회피된 해당 위원은 제8조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평가기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및 관련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토록 규정
 - 제정령안은위원의 자격·임기 등 위원회 구성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

문제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및 부패통제장치 미흡

-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해촉 규정 등 부패통제장치 부재
 - 이에,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생략)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에게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8호, 2019. 3. 26., 제정]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19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3장

현행 법령 및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사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제2절 농·축·수협 회원조합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1절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 17개 시·도 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 3,700억 원 규모
 - ※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 750억 원 규모
-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 재정누수 가능성이 상존
 - ※ 체육진흥 조례 제정 지자체는 광역시·도 14개, 기초자치 107개에 불과
-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은 전적으로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임에도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투명성 및 책임성 미약
 - 체육단체의 임직원 보조금 횡령, 후원금 유용, 채용비리 등 부패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약

- 안산축구협회 후원금은 회장 쌈짓돈 [NEWSIS, '19. 4. 3.]
- '팀킴' 후원금 횡령·욕설 다 사실... [문화일보, '19. 2. 21.]
- 제주 생활체육회 비리 요지경 [노컷뉴스, '17. 5. 15.]
- 문경시 체육회 간부 거액공금 횡령 물의 [대구신문, '17. 4. 19.]

–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고려할 때, 시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시급(*20.1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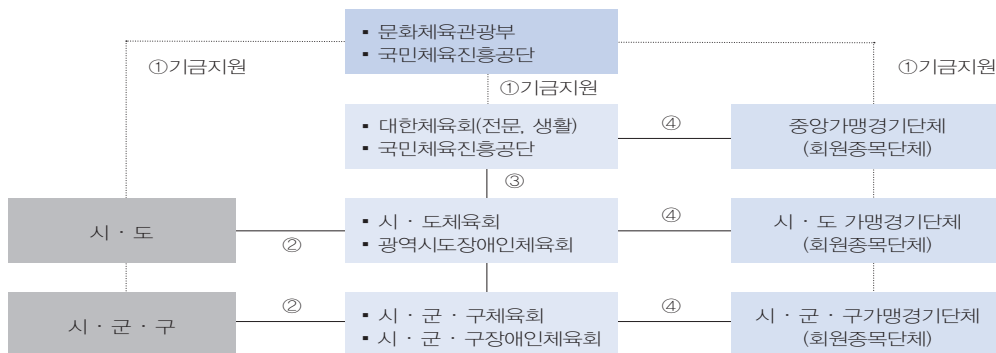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



II.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

체육단체 구성, 지원 및 관리 체계

- 체육 분야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문 및 생활 체육은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 및 관리
 - 지자체는 해당 시·도(시군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이하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의 80·90%이상을 보조하고 있음
- ※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 및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



- 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 체육기금 지원
- ② 지자체는 해당 체육회(전문, 생활, 장애인)에 지방비 및 국비 등을 지원
 - * 광역시도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의 80~90%(약 150~350억원 규모) 지원
 - * 운영비(민간경상보조), 인건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 ③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부형식으로 구성되어 각종 규칙 등은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예산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약 3~4억 규모)
- ④ 시도체육회 가맹 회원종목단체는 약 70개 종목(축구, 야구, 태권도 등)내외 이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실시

시·도체육회의 법적지위

-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등의 정회원단체로서 지위를 가짐

▶ 대한체육회 정관 (2017. 6. 8.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개정 2018. 4. 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6조(지부)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 “시·도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둔다.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을 근거로 매년 시·도체육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자체 사무와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 수행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금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 지자체(기초 제외)의 시·도체육회 보조금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전문 및 생활 체육이 약 3,700억 규모이고, 장애인 체육이 약 750억원 규모
 - 시도별 지원규모는 약 110억 · 350억 규모로 차이가 있음

[2018년 기준 시·도 체육회 보조금 지원 규모(기초지자체 제외)]

(단위: 백만원)

	시·도 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총 예산	지자체 보조금	국비 등	자체 수입	총 예산	지자체 보조금	국비 등	자체 수입
계	513,442	371,460	110,133	31,849	90,932	75,595	12,759	2,578
서울	78,194	35,870	26,882	15,442	10,944	9,127	1,599	218
부산	35,213	25,567	7,064	2,582	4,616	4,256	250	110
대전	25,313	20,126	5,187	—	4,560	4,055	382	123
대구	30,697	21,277	8,693	727	4,502	3,410	687	405
인천	57,042	47,920	2,205	6,917	6,443	5,916	388	139
광주	41,049	31,367	6,979	2,703	5,890	5,142	620	128
울산	17,982	16,188	1,794	—	3,158	2,453	705	—
경기도	39,059	29,458	9,601	—	11,144	10,516	628	—
강원도	19,690	16,891	2,637	162	5,042	4,785	257	—
충북	19,030	15,415	3,082	533	6,638	4,915	1,004	719
충남	17,127	11,752	5,309	66	3,294	2,752	365	177
경북	28,225	21,633	6,125	467	3,877	3,387	243	247
경남	24,547	18,661	5,866	20	4,373	3,375	998	—
전북	41,640	29,463	10,658	1,519	7,330	3,418	3,652	260
전남	17,935	12,767	5,030	138	4,494	3,850	592	52
제주	20,699	17,105	3,021	573	4,627	4,238	389	—

(17개 광역시·도 제출자료 취합결과, 2019. 3.)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지자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미비 · 운영비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 규정 미비 · 운영비의 관례적 예산 편성·지원에 따른 재정누수 가능성 및 부당집행 발생 · 체육회 사무실로 행정재산 무상사용은 특혜라는 비판	⇒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구체적 운영비 지급기준 및 부당집행 방지에 대한 규칙제정 근거 마련 ·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관리책임 명확화
2.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및 통제 미비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미비로 투명성 및 책임성 결여 · 체육진흥 보조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흡	⇒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
3.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 임의단체로 운영,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곤란 및 법적책임성 미흡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 시도체육회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인등록을 정관 등에 명확하게 규정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미흡 ·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원채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채용비리가 자주 발생 ※ 채용비리 조사결과 수사외의 5건(14%) · 임직원의 기업후원금이나 기부금 횡령 및 사적유용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공개채용 원칙 등을 규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 · 후원금의 사용목적 및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 체육단체 재원으로 후원금을 명시하여 관리누락 방지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근거로 시·도(시·군·구)체육회에 직원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9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나,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조례 등) 미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

- 시·도(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의 관례가 적용되고, 지원규모도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운영비의 관행적 편법집행 등 부당집행 사례도 자주 확인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적정) ○○시 체육회는 2016. 8. 24. ~ 2017. 10. 13. 사이 총 40회에 걸쳐 10,445천원의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150,310원의 개인물품 구입한 사실이 확인(○○시 감사결과, 2015. 12.)

■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공용차량 이용 시는 일비 2분에 1 감액 지급 및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른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총 59건 2,731천원을 부당 집행(○○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시체육회는 직원근무복을 구입하면서 예산산출기초를 변경하면서 까지 이미 1인당 2벌씩 지급한 18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근무복을 추가로 구입하여 1,152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 － 시·도(시·군·구)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당집행도 빈발

※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등으로 직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육회 내부규정에 불과, 지자체는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근거 없이 체육회에 인건비 지원

■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체육회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김○○외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2017. 2.)

■ ○○시체육회 2018년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19. 3.)

	월평균수령액	총수령액	지급월	월최고수령액
사무국장	783,925	9,407,100	12월	1,599,750
총무과장	665,961	7,991,535	12월	1,061,025
총무과(총무)	523,554	5,759,095	11월	838,350
주임 A	611,103	5,499,930	9월	1,035,045

● 또한, 상당수 지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시·도(시·군·구)체육회 사무실로 행정재산의 무상제공이 관행화되어 있어 특혜제공 비판 제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특정단체에 20년 넘게 무상 임대 특혜제공(한경, 2018. 8.)

－ 위탁시설의 사용 등의 경우도 사무실 임차료를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무상제공과 차이가 없는 상황

※ 시·도(시·군·구)체육회가 행정재산을 사무실로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시·군·구 체육회 등 사무실 공간 지원 현황]

	지자체수	행정재산		기타 (민간임차)
		행정재산	지급월	
시군구체육회	212	108	93	11
구성비(%)	100.0	50.9	43.9	5.2
시군구장애인체육회	92	54	29	9
구성비(%)	100.0	58.7	31.5	9.8

(시군구 제출자료 분석결과, 권익위원회 2019. 3.)

개선방안

- 지자체가 시·도(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u>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u> 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u>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운영비를 보조</u> 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5. (생략)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5호)

제20조(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 제1384호)

제13조(예산안의 편성 등) ① …(중략)… 센터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인건비·운영비는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시·군·구) 체육회에 경상적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정·현원 변경 등 예산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체육진흥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 운영비는 인력운영비(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와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로 구분 가능

- 또한,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 관련 규칙(지침)으로 각종 수당 지급한도(초과근무 월 15시간 등),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의 준수 의무 부과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시도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신 설〉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정한다.
〈신 설〉	③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재산을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이 사무실 사용하는 경우도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절차나 조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시·도 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조례 등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근거 규정 명문화

※ 무상제공의 경우 그 근거를 행정재산 사용허가부에 명시하여 책임소재 등 명확해 지도록 관리

⇒ 시·도(시·군·구)별로 관련 내용을 규칙(지침) 등에 반영

【참 고】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0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공유재산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④ (생략)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보조금 지원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전문체육 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 제정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진흥조례」로 생활체육 사업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은 「체육진흥조례」 제정 없이 보조금 지원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

	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17개 시·도	14개 시·도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	(1개) (장애인체육별도규정)	3개 시·도 (생활체육만 규정)
기초지자체	107개 시군구 (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 미비)	73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만 규정)	84개 시군구 (생활체육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 조례 검색 결과 분석(2019. 3. 기준)

- 지자체는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재무회계 규정 등의 준수'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나 보조금 횡령이나 부당집행 및 예산낭비 사례 지속 발생
 - － 행사용 기념품 과다구매, 계약금액 분할을 통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보조금 부당집행 및 예산낭비

- ◇◇도체육회는 최근 3년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사항 총27건을 자체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4건을 1인 수의계약이 불가 함에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1인 수의계약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총47건을 분할계약한 사실이 확인됨(◇◇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 1.)
- ◇◇도체육회는 행사관련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요량 파악을 소홀히 하여 50%가량의 재고가 남게 구입하여 보조금을 낭비하고, 기념품 수불대장도 미작성(◇◇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 1.)

－ 보조금방치 불용처리, 증빙 없는 집행, 위탁시설 수익금 부당사용 등

- ○○도체육회는 ○○체육기금사업 예산 167,000천 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예산잔액이 불용되는 결과 초래(○○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 1.)
- ○○도체육회는 도비보조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후 관리하여야 하나 총75건의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어 도비보조금 잔액 1,486천원 반납(○○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 1.)
- ○○도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2016. 10. 4. 파견운영비 155,7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회 폐회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2016. 12. 22. 정산하고 같은 달 30일에 반납처리 하면서 파견출장 여비도 증빙 없이 지급(○○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 1.)
- ○○도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종합사격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사용 명목으로 지출결의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부당하게 사용하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도체육회감사결과, 2017. 1.)

개선방안

- 전문 및 생활, 장애인 등 체육 진흥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지자체는 근거 규정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련
-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반영

【조례 예시① : 전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전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조례 예시② : 생활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3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신설 2018. 1. 11.] 8.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조례 예시③ :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00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 9. (생략)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관련 조례 등에 명문화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반영

【조례 예시① :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예시②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으로 지회(지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회(지부)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¹⁾로 운영되어 법적책임성 미흡
 - － 재원확보를 위한 독자적 수익사업이 곤란하고, 지자체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법인격 부재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책임 있는 조치나 법적 대응 곤란

1) 【임의단체와 비영리법인과 차이점 비교】

▶ 비법인사단(임의단체)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	허가(○)
설립절차(등기)	설립등기(×)	설립등기(○)
법률행위	대표자명의(법적책임 : 대표자)	법인명의(법적책임 : 법인)
세법관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조세특례 혜택	포함(×)	포함(○)
재산소유형태	총유	법인소유

- ▶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제32조, 제3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록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임

- △△시 체육회가 △△시 축구협회에 지원한 지방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횡령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있었으나, 반환되지 않아,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시체육회는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시가 △△시체육회를 대신하여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시체육회 제출자료 확인결과, 2019. 3.)

– 외부회계감사 및 국세청 신고·공시 등을 통한 재무제표에 의한 투명한 기관 운영 및 회계오류 검증 등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주요 경영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나,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미흡

- 지자체장의 시·도(시·군·구) 체육회장 겸직금지('20. 1. 16.이후)로 지방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던 시·도체육회의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시급
 - 민선회장이 운영되는 시도체육회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제한 가능성 상존하고, 업무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발생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20. 1. 16.] 제43조의2

- 지자체의 시·도체육회에 대한 관리방식도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시 가능했던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
 - 시·도체육회 운영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기준 미비
 - ※ 지도·감독의 범위, 정기 및 수시 감사 기준 및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 적발 시 관련자 조치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선방안

-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각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등의 지부(지회) 또는 별도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법인등록 등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 목적, 명칭 또는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통합(2016년) 이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3조(사무소)는 각각의 시도생활체육협의회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있었음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지부(지회) 등록 근거 명확화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②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② 대한체육회 시·도지회의 명칭(영문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대한체육회 시도지회 명칭 및 소재지

현 행	개선안(예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주소) 각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로서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주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명칭(영문명칭) 및 주소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장애인 체육회 시도지부의 명칭 및 주소

-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조례에 명문화
 -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형사고발 조치 등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

【조례 예시 : 시·도(시·군·구)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지도·감독)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시·도(또는 시·군·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00조(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시·도(또는 시·군·구)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상당수 시·도체육회가 직원채용 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 절차에 따른 채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채용관련 비리가 자주 확인
 - － 시·도체육회 업무총괄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도 객관적 기준이나 채용절차 없이 체육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만으로 임용
 - ※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시는 사무처장의 대우수준이나 급여 등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했으나 민선회장 시는 적용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요구
 - ※ (예시) ○○도체육회는 2018. 8월 박○○(74년생)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계약직 2호(지방공무원 2급 상당), 연봉 93백만 원(월775만 원)으로 고용계약

■ 자의적 직원채용절차 진행 사례 (○○시 자체감사자료 확인결과, 2019. 3.)

- ○○시장애인체육회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직원채용 공고(2017. 5. 2., 2017. 6. 2., 2017. 7. 17.)하고 응시자격기준도 불명확하여 주의조치

- － 불요불급한 인력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 채용관련 비리도 자주 확인
 -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18. 11. 6.~'19. 1. 31.)결과,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수사의뢰 36건 중 시도체육회가 5건으로 약14.0%를 차지

■ 채용비리 적발 사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 ○○광역시체육회는 '15.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정하게 배점을 부여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가 최종 합격되었고, '16. 2월 시·도체육단체 통합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조직개편 및 인력채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2명을 특별 채용하여 수사의뢰
- ◇◇광역시체육회는 '17. 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 처리하고, '15.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하여 수사의뢰

- 선수단 초상권 등 마케팅 자산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기업 후원금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기부금²⁾의 횡령이나 부당한 유용 사례가 자주 확인되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
 - ※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의 경우 마케팅자산의 범위, 후원권자, 상품화권자, 등 권리는 규정은 있으나, 후원금 등 자금 사용 및 관리 규정은 미비

■ ○○시 축구협회 후원금은 회장 쌈짓돈 [NEWSIS, '19. 4. 3.]

-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축구협회 회장 이모씨에게 전달 ...시 체육회는 축구협회 운영 공공목적으로 써야 할 후원금을 회장 개인 활동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 '팀킴 후원금 3천만원' 감독 부부계좌로 입금됐다 [헤럴드경제, '18. 11. 23.]

- 기업후원금은 체육단체 운영 재원³⁾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기부금 등과 달리 사업수익금으로 관리, 누락 등 부당사용 가능성 상존
 - ※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2018년 손익계산서의 사업수익은 94,945백만 원이고, 이중 후원사 수익이 31,777백만 원(33.4%)이었음
 - ※ 정관에서 재원(재산)으로 명시할 경우 예산편성 및 관리, 보고 의무 발생하나, 후원금을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하지 않아 누락 가능성 상존

2) 체육관련 후원(Sponsorship)과 기부(Donation)의 차이점

구분	후원(Sponsorship)	기부(Donation)
개념	체육단체가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마케팅 권리를 제공하고, 후원단체는 후원금(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	기부단체(기업/단체/개인)가 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체육단체에 기부금(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
권리제공	후원등급(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사)에 따라 차등제공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 없음
비용처리	후원금은 기업의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한도 없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거래유형	공식후원 계약체결이 필요한 유상거래이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별도 계약체결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거래

※ 마케팅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독점공급권, 로고노출권, 호스피탈리티 지원 등이 있음

※ 시도체육회(회원단체 포함)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개선방안

-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의적 채용절차 방지를 위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 마련
 - －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임용수준 및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보수로 지원하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절차 마련
-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사무처장 공모절차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49조(사무처) ② (생략)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⑥ (생략)	■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제49조(사무처)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사무처장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립된 임용계획에 따른 공모절차 및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 － 직원 채용절차·기준 및 운영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채용 방지
 - ※ 직원채용 규정에는 채용계획 수립·공고, 전형절차, 평가기준,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채용절차 사후관리, 특별채용 대상·절차 등 명시
- ⇒ 시·도(시·군·구)체육별로 「직원 채용 내규」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시체육회 직원 채용 내규(예시)】

■ ○○시 직원채용 내규(예시)

제1장 총칙

제2장 신규채용 :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채용요건 및 시험방법, 차별금지

제3장 채용시험의 공고 : 공고시기, 공고매체, 공고내용

제4장 시험의 방법 : 시험의 단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시험위원의 임명, 외부전문가 참여, 시험위원의 제척, 비밀누설금지, 채용과정 공개, 시험실시 기관, 시험기준, 인사채용비위에 대한 통제 등

부칙

- 기업 후원금을 체육단체가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에 수익금의 사용목적(예: 청소년 체육진흥 등) 및 사용제한 규정이 명문화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특히, 후원금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검토
-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마케팅 규정」 등에 반영
- 체육단체가 후원금을 누락 없이 체육단체 예산으로 편성·집행 관리하도록 체육단체 운영 재원으로 후원금을 명문화
 -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후원금을 재원으로 명시】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후원금 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IV. 조치사항

조치사항(요약)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범위 ·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련 조례 제 · 개정을 통해 명문화 ⇒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관련 규칙(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 마련 ⇒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 시도체육회의 행정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또는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등 관리책임 명확화 ⇒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관련 규칙(지침)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규정을 관련 조례 제 · 개정을 통해 명문화 ⇒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 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관련 조례에 명문화 ⇒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 시도체육회의 지부(지회) 또는 별도 법인 등록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공개채용 원칙 등을 규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 사무처장의 공모 통한 임명 및 임용수준 및 급여에 대한 사전협의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 직원 채용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 직원채용 내규 등 의무적 마련 ⇒ 시·도(시·군·구) 체육회 「직원채용 및 인사운용 내규」 등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에 후원금 등 수익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명문화 ⇒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 등에 반영 ▶ 체육단체 재원으로 후원금 명문화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조치기한

2020. 12월

2절 / 농 · 축 · 수협 회원조합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추진 배경

- 농 · 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 · 축협 및 수협 단위조합 임직원의 공금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위법 · 부당 행위가 자주 발생
 -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각종 이권을 결정하는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는 금품제공, 허위서류 · 위장전입 등 불법선거 횡행

※ 지역 농 · 축협 조합원 214만명, 조합 1,119개소, 지역 수협은 조합원 16만명, 91개소

-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이 만든 ‘억대 뇌물 · 성폭력’ 비리 (중앙일보, 2019. 2.)
- 농민에게 인색, 제 식구에게 ‘0%대 특혜금리’ 농협 (연합시론, 2018. 10.)
- ‘가짜’가 흔드는 조합장 선거…허위서류 · 위장전입 판처 (중앙일보, 2019. 3.)

- 지역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카르텔형 부패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 규정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정관, 조합 규정례
-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정관, 조합 규정례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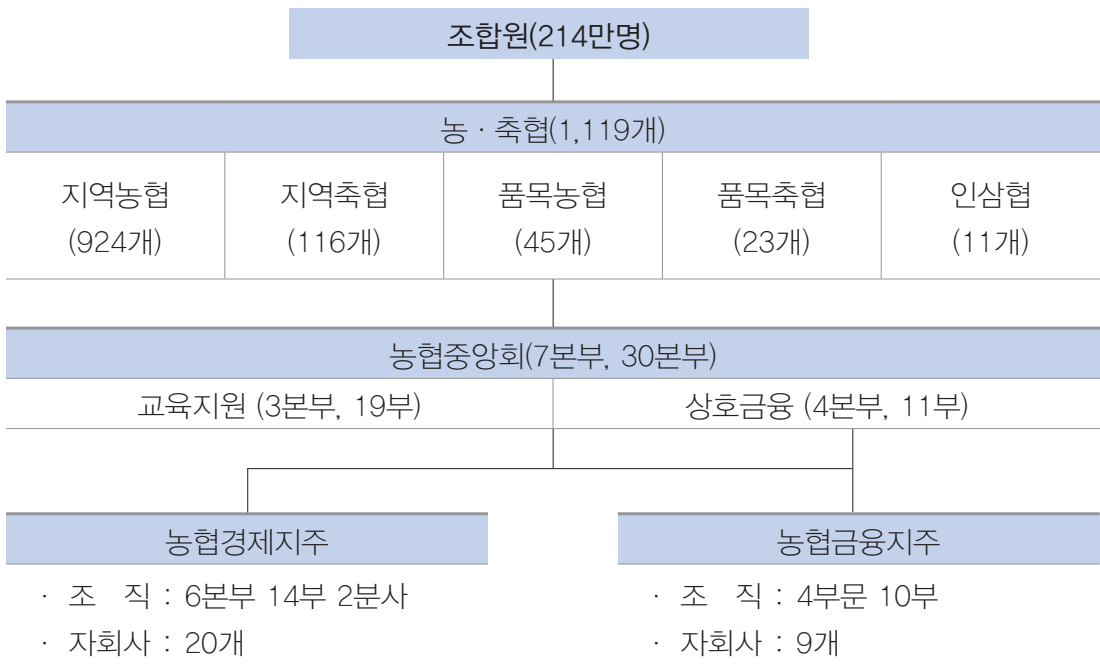
- 제도운영 실태조사('19. 5.~'19. 8.)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초안 마련('19. 9.)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조회('19. 10.)
- 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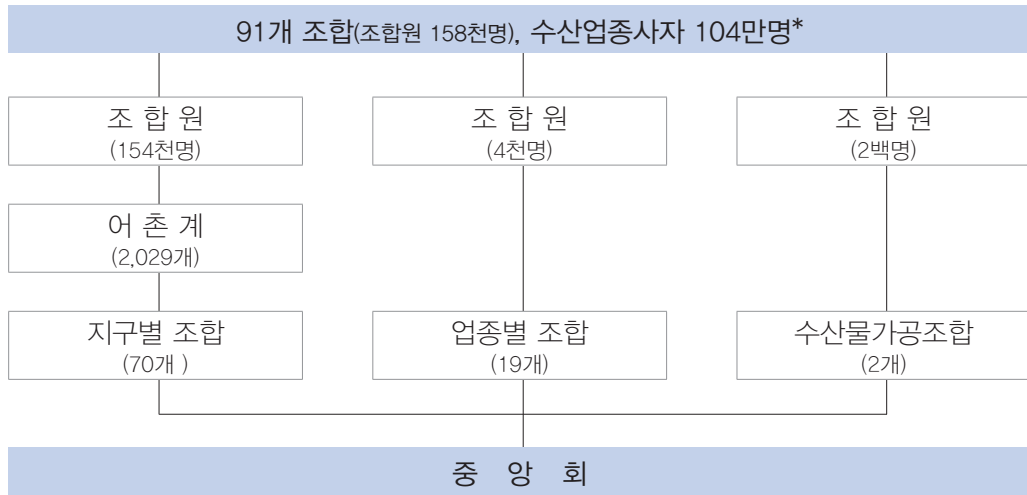
II. 농·축·수협 구성 및 사업 현황

농·축협·수협의 구성 현황

-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와 1,119개 회원 단위조합으로 구성
 - － 중앙회는 교육 및 상호금융사업,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및 경제사업 지원, 금융지주는 농업인 농업금융 지원 등 수행



● 수협은 수협중앙회와 91개 회원 단위조합으로 구성



*해양수산부 수산업 실태조사('16년 기준)

회원 단위조합 설립 기준

- 농·축협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1천명 이상(출자금 5억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3억 이상), 지구별 수협은 구역거주 조합원 자격자 과반수 이상으로 200인 이상(3억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

※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은 '조합 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77조·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조건 및 가입

- 농·축·수협 단위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 내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둘 이상의 조합가입은 금지됨(단, 지역조합 조합원의 품목조합 가입은 가능)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 6. (생략)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6.>

1. ~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축협 조합원 자격 및 탈퇴현황

- '18년말 기준 전체 조합원은 2,146천명으로 전년대비 70천명 감소

(단위 : 명)

구 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	합 계
2018년말	1,909,351	143,653	69,451	11,318	12,812	2,146,585
2017년말	1,956,107	162,994	71,939	11,188	13,993	2,216,221
전년대비	△46,756	△19,341	△2,488	130	△1,181	△69,636

[최근 5년간 조합원수 변동현황]

구분(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합원수	2,350	2,296	2,246	2,216	2,146
증감	▲81	▲55	▲49	▲30	▲70

- 총 탈퇴인원은 164천명으로, 그 중 무자격 탈퇴자는 94천명임

(단위 : 명, %)

구 분	조합원수	총탈퇴인원(A)	무자격탈퇴(B)	B/A
2018년	2,146,585	163,585	94,101	57.5
2017년	2,216,221	105,313	53,429	50.7
2016년	2,246,123	122,123	58,364	47.8
합 계		391,021	205,894	52.7

– 무자격 발생사유는 사망 및 자격상실이 93.3%임

구 분	사망		자격상실		이주		파산		기타		합계 (명)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8년	11,313	12.0	76,467	81.3	2,502	2.7	173	0.2	3,646	3.9	94,101
17년	10,775	20.2	36,566	68.4	1,866	3.5	104	0.2	4,118	7.7	53,429
16년	12,011	20.6	38,866	66.6	2,447	4.2	194	0.3	4,846	8.3	58,364

농·축협 사업현황

● 농·축협 사업현황

– 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는 연간 약 54조6천억원 규모이고, 상호금융은 대출금 규모만 263조2천억원 규모임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획		'19. 3월말		전년동기대비	
		연 간	3월말 ^(주1)	실 적	달성률	실 적	성장률
경 제 사 업	판 매	257,216	64,304	55,999	21.8	57,161	△ 2.0
	구 매	107,981	26,995	21,539	19.9	21,348	0.9
	마 트	106,240	26,560	23,310	21.9	22,941	1.6
	가 공	59,824	14,956	12,563	21.0	12,880	△ 2.5
	기 타 ^(주2)	14,781	3,695	2,952	20.0	3,083	△ 4.2
	계	546,042	136,511	116,363	21.3	117,413	△ 0.9
상 호 금 융	예수금	3,357,975	3,357,975	3,220,990	95.9	3,154,929	2.1
	대출금	2,632,667	2,632,667	2,474,138	94.0	2,459,713	0.6
보험료		73,922	18,481	17,978	24.3	19,918	△ 9.7

주) 1. 계획은 분기계획이며, 상호금융(잔액)은 연간계획 및 전년말대비

2. 기타 : 생장물, 창고이용, 운송, 수수료 등

● 유형별 손익현황

- 연간손익은 2019. 3월말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농협은 약 681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축협은 40억원, 인삼협은 3억원 규모로 감소하였음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획	'19년 3월		'19.3월말 실적달성률	전년동기대비	
		실 적	달성율		실 적	성장률
경 제	11,947	5,339	44.7	4,658	681	14.6
구 매	2,502	1,079	43.1	1,119	△40	△3.6
마 트	33	△3	△9.1	0.4	△3	△850.0
가 공	14,482	6,415	44.3	5,777	638	11.0

수협 사업규모 및 순이익 현황

● 사업규모

- 수협의 연간사업은 '18년 기준 8조원 규모이고, 이중 상호금융이 5조 7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목표	비고
계	66,776	72,612	80,997	83,914	- 지도사업비, 자금지원액 예수금평잔 공제료 취급액, 수매액
지도	504	572	565	768	
상호	45,995	50,957	57,709	58,800	
공제	8,042	7,675	8,158	8,800	
경제	12,235	13,408	14,565	15,546	

● 당기순이익

- 수협의 2018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208억원이었음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목표	'19년 목표
계	412	225	208	193
상호	190	134	165	147
공제	127	48	68	45
경제	95	43	△25	1
신용특별회계	598	1,962	2,307	2,38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농·축·수협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1. 조합장 주관 이사회에서 조합장 퇴직금 의결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 중양회 제시 퇴임 조합장의 공로금 지급 비율(모범안)을 회원조합 이사회 의결로 임의 변경하여 퇴직공로금 과다지급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 규정 등 관련 근거 없는 '보로금' 등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부당지급	⇒	1.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직 공로금 지급 제한 - 임원 보수 등 지급 기준변경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필수절차로 명문화하고, 퇴임 공로금 지급 비율 등의 변경 제한 - 임원보수 규정 등에 명시적 근거 없는 공로금 등의 지급제한 근거 명확화
2. 회원조합에 대한 특혜 및 실적 과시용 자금 배정 -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이차보전자금의 경우 재정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 ※ 재정낭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유치 실적 과시에 유리해 홍보수단으로 남용 - 농협 조합상호지원자금이 중양회 이사로 활동하는 조합에 특혜 배분된다는 비판 ※ 조합 평균 75억 : 비상임이사 조합 평균 119억	⇒	2. 회원조합 자금배정의 투명성 제고 - 정관(농협)으로 운영하는 이차보전자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예산 직접지원방식으로 변경 검토 - 지원 자금배정을 결정하는 '자금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검토
3.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관리부실 - 당연 탈퇴 대상 무자격자 조합원을 이사회에서 탈퇴시키지 않고 허위서류 등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 ※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선거참여로 선거무효소송 등 제기	⇒	3. 무자격 조합원 배제 등 관리책임 강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여 탈퇴조치 미 실시 등의 경우 관리책임 부과 근거 마련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4.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편중 위촉 및 부실운영 통제장치 미흡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이 특정단체 등에 집중·위촉되고 있어 임원선정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내부위원 구성 부실 운영에 대한 통제 미흡	4.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공정성 제고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특정단체 편중 위촉 방지 규정 명문화 ※ 대표성 있는 복수단체의 공개 추천 등용 -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원칙' 명문화 및 구체적 후보자 선정 절차 규정 마련
5.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목적이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집행 - 중앙회 비상임 이사 등에게 목적이 불분명한 활동비·연구비 명목의 선심성 수당을 매월 정액 지급 - 회원조합 이사회 결정으로 이루어진 선진지 견학 명목의 관광 등 선심성 예산 부당집행	5.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실비 명목으로 정액지급 하는 활동비,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용범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명확하게 규정 - 회원조합 이사회의 부당한 선심성 예산집행 결정에 대한 이사회 변상책임 근거 마련
6.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내부통제 기준 - 공금횡령 등 임직원 범죄에 대한 고발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대부분 자체징계로 종결, 재량권 남용 가능성 * 횡령금액 1억 이하는 고발 제외 등 - 임직원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제외하는 등 자의적 고발기준 적용 가능성	6. 무자격 조합원 배제 등 관리책임 강화 - 임직원의 직무관련 중요 범죄행위가 자체 징계조치로 종결되지 않도록 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금횡령 1백만 원 이상은 고발조치 - 직무관련 공금 횡령 등 일정한 부패행위는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1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임 공로금 지급 제한

현황 및 문제점

- 농·축협 및 수협 회원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장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장 퇴임 시에 ‘퇴임 공로금’이 지급됨
 - 퇴임 공로금은 농협은 매 1년에 월보수액의 1배, 수협은 2배 지급
- ※ (예) 수협단위조합장으로 4년 재임 후 퇴직 시 월보수액이 1천만 원인 경우 퇴직공로금은 8천만 원 (=4년×2배×월보수액) 지급

[농·축협 및 수협 ‘퇴임공로금’ 지급 기준 비교]

구분	수협	농협
지급대상	6월 이상 재임한 경우	1년 이상 재임 시
지급액	최종 퇴임 시 본봉×재직 매 1년에 2	30일 평균 보수액×재직 매 1년에 1
지급특례	상임이사제, 전무제 최종 본봉액 중 퇴임자에게 유리한 경우로 지급	특례규정 없음
재임기간 계산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재임기간 중 1년 미만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계산, 6월 미만인 경우 1년 지급율의 반액 지급	1년 미만 재임기간은 일할 계산
감액기준	업무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 등 징계면직 결정 통보받은 경우 “반액” 감하여 지급	업무관련 금고 이상의 형, 임원개선 (징계면직), 해임결의, 당선취소, 당선무효의 경우 “전액”을 감함 (예외적으로 사정으로 고려하여 감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

- 수협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장 퇴임 시 지급하는 ‘퇴임 공로금’ 지급기준을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로 임의 변경하여 과다지급하거나 부당 지급한 사례 확인
- ※ 임원 보수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모범안)을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조합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

수협 단위조합 퇴임조합장 퇴직공로금 지급 부적정 사례

- A조합장은 본인 임기만료를 앞두고 특별공로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약 5억원을 퇴직공로금으로 수령, 모범안에 비해 3억 8천만원 과다 수령
- D조합장은 재직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여 모범안에 따르면 2천 4백만원을 받아야 하나, 지급율을 임의로 상향(매 1년마다 본봉의 8배 지급)하여 약 1억 5천만원을 퇴직공로금으로 수령
- 수협 단위조합 퇴임조합장 중 1억 이상 과다수령 현황
※ 91개 수협 중 37개 수협에서 지급율을 변경하거나, 본봉이 아닌 평균임금(본봉에 비해 약 1.7배)으로 퇴임공로금 산정

구분	지급액	모범안 산출액	과다지급액
A조합장	51,431	12,975	38,456
B조합장	46,478	16,478	30,000
C조합장	45,424	26,704	18,720
D조합장	15,360	2,400	12,960
E조합장	24,000	13,500	10,500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수협중앙회 제출자료(2019. 7.)

- 농협 회원조합은 ‘임직원 보수 및 실비보상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자체 의결하여 부당하게 지급 사례가 언론에 지적

■ 퇴임 조합장에 역대 공로금 지급 ‘논란’ … 조합원들 반발 (NEWSIS, 2019. 8. 1.)

퇴임 조합장에게 역대의 공로금을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임원들이 수령하는 등 농협의 예산집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중략)…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 “가격 폭락 농민 시름 깊은데”… 퇴임조합장에 역대 특별공로금 (연합뉴스, 2019. 8. 1.)

- 일부 농협 회원조합에서 법적근거 없는 ‘특별 보로금’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

- 조합장 안○○, 상임이사 류△△, 비상임이사 한◇◇ 등 16명은 2015. 12. 29.에서 2018. 12. 28.사이 총 6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비상임임원(이사·감사·사회이사)에게도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직원 특별보로금 지급’안건을 부당 의결하여 같은 기간 총 7회에 걸쳐 비상임임원 16명에게 특별보로금 총 150,000천원을 복리후생비 기타항목으로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모두 ‘주의 촉구’의 징계조치 (권익위 실태조사 시 농협제출자료, 2019. 6.)

개선방안

- 조합장 등 임원의 보수나 퇴임공로금 등이 회원조합 이사회 의결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임원 보수 규정 제·개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 규약(모범안)'에 관련 내용 명시
 - 퇴임 공로금 지급대상도 1년 이상 재임자로 한정하고, 지급비율 변경을 통한 편법 지급 방지를 위해 기준 지급율의 제한규정 명문화

⇒ 수협 회원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정(모범안)」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7조(보수의 종류) 조합 상임임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 본봉 2. 성과급여 : 상여금 3. 특수급여 : 급식보조비 4. 퇴임공로금 제8조(본봉) ①조합 상임임원의 본봉은 월액으로 하고 별표 제1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본봉액은 조합의 수지 및 경영여건을 감안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7조(보수의 종류) 조합 상임임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 본봉 2. 성과급여 : 상여금 3. 특수급여 : 급식보조비 4. 퇴임공로금 제8조(본봉) ①조합 상임임원의 본봉은 월액으로 하고 별표 제1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본봉액은 조합의 수지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회에서 정한다.

현 행	개선안(예시)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14조(퇴임공로금) ①조합 상임임원이 임기만료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퇴임하였을 때에는 퇴임당시 본봉에 별표 제4호에 의한 기준지급율을 승한 퇴임공로금을 지급한다. ②퇴임공로금은 6월 이상 재임한 조합 상임임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⑤ (생략) 〈별표4〉 조합 상임임원 퇴임공로금 지급율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직 위</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조 합 장</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2</td></tr> <tr> <td>상 임 감 사</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2</td></tr> <tr> <td>상 임 이 사</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2</td></tr> </tbody> </table>	직 위	금 액	조 합 장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상 임 감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상 임 이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14조(퇴임공로금) ① 조합 상임임원이 임기만료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퇴임하였을 때에는 퇴임당시 본봉에 별표 제4호에 의한 기준지급율을 승한 퇴임공로금을 지급한다. 단, 기준 지급율은 매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보수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년 미만 재임 ... ③~⑤ (현행과 같음) 〈별표4〉 조합 상임임원 퇴임공로금 지급율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직 위</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조 합 장</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1</td></tr> <tr> <td>상 임 감 사</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1</td></tr> <tr> <td>상 임 이 사</td><td>재임 매1년에 대하여 1</td></tr> </tbody> </table>	직 위	금 액	조 합 장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상 임 감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상 임 이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직 위	금 액																
조 합 장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상 임 감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상 임 이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2																
직 위	금 액																
조 합 장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상 임 감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상 임 이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1																

《 유사 입법례 》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모범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보수, 퇴직급여금, 재해보상과 실비변상, 퇴임공로금 및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조 : (생략)

제4조(기본연봉)

- ①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은 매년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2009. 12. 9. 개정)
- ②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연도에는 임기개시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기본연봉의 60% 이내에서 정하되, 총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제12조(퇴직급여금) ①상임임원이 퇴임하는 때에는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보수 해당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하며, 평균보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상임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퇴임공로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② 최초 임기개시 후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상임임원에게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 ④ (생략)

- 공로금, 특별보로금 등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회원조합에서 실비보상 명목으로 이사회 의결로 임의로 결정하여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조합장 등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 마련
 - 실비보상 명목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특별보로금 등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2조(적용범위) ① 임원의 보수, 퇴직급여금, 재해보상과 실비변상, 퇴임공로금 및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약에 의한다. ② 임원의 조합업무로 인한 국내외 여행시의 여비는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신설 >	▪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사회 의결 등으로 보수 및 실비보상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회원조합 자금 배정의 투명성 제고(농협)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자금은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 자금’으로 구분
 - 조합상호지원자금은 농협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이차보전자금은 농협이 실제 보유한 자금 없이 숫자상 지원예상액을 상정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원액에 대한 이자만 지원
 - ※ (예) 농협중앙회에서 A조합에 이차보전자금 10억원 지원은 A조합에 1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A조합의 10억 대출에 소요되는 은행대출 이자 (연 3.08%) 약3천8십만원 지원

구분	조합상호지원자금	이차보전자금
운영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농협중앙회정관」 제6조의2
구성규모 (‘18년말기준)	5조 4,261억 원	5조 7,509억 원
운영방법	중앙회와 농축협 공동으로 조성하여 합병, 농기계은행, 경제사업활성화(유통지원자금) 등에 지원	농협은행에서 차입하며 농협별 차입자금에 대해 분기별 차입이자를 중앙회에서 지원
지원대상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계획사업(유통지원, 농기계은행, 농업인복지지원)	사업별 자금수요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농축협 시설지원, 재해지원, 버매입 등 사유발생시 지원)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우 일반조합에 비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에 더 많이 특혜 배분된다는 의혹
 - 자금 지원계획, 결산심사, 자금지원 심의를 위한 자금지원심의위원회가 대부분 내부위원으로 구성,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 수행이 곤란
 - ※ 위원 19명 중 내부인사가 16명이고, 외부위원은 3명에 불과

-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이사 조합장에게 특혜 의혹(조세금융신문, '15. 10.)
- 14년 자료에 의하면 일반조합은 평균 75억 원, 비상임이사 조합은 평균 119억 원이며, 특정 비상임이사 조합의 경우 494억 원을 지원받았음(권익위 실태조사, 2019. 6.)
- 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2019. 3월 현재) : 내부 16명(위원장 1, 조합장10, 부실장5명), 외부위원 3명(농식품부1, 교수2)으로 구성

- 이차보전자금은 정관으로 조성·운용하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예산 직접지원 방식에 비해 재정낭비가 발생
 - －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홍보할 수 있고, 회원조합은 자금 유치 실적을 과시로 차기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
 - ※ 단위 조합은 대출 금리(약 2.92%)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농협은행 예금금리로 예치(약 2.10%)하여 운용하고 있고, 매년 대출 및 예금금리 차이(약0.82%) 만큼의 재정손실 발생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2016. 12. 27. 개정)

▶ 이차보전자금과 관련한 누수 금액 추산

농협은행은 이차보전자금(18년: 5조 7,509억원)을 회원조합에 대출금리('18. 11. 기준 2.92%)을 적용하여 연간 약 1,500억의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 반면, 일선 단위조합은 차입 자금을 농협은행에 예치운용('18. 11. 기준 예금금리 : 2.10%)하여 중앙회는 대출 및 예금금리 차이(0.82%)만큼의 추가비용을 매년 낭비하는 상황

※ 단위조합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된 자금을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의 최대 120%까지 사용 가능. 원금은 1년 뒤 상환

- '18년 이차보전자금 : 5조 7,509억 원
- 중앙회 이자부담액 : 1,679억 원 ('18. 11. 대출금리 2.92%)
- 일선조합의 이자수입액 : 1,207억 원 ('18. 11. 예치금리 2.10%)
- 0.82%의 금리차이로 472억 원(=5조 7,509억×0.0082) 추가비용 발생

개선방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으로 정하여 조성·운영하고 있는 이차보전자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예산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방안 검토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농업협동조합법(2017. 12. 30. 개정) 제134조(사업)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34조(사업)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u>이차보전자금</u>,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호지원자금의 특혜 배분지적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방안검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등에 반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2016. 12. 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

제6조의2(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생략)

②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심의회(이하 이 조에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합상호지원자금
2. 이차보전자금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의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1. 회원지원 담당 집행간부
2. 위원장이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조합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인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계전문가 1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계전문가 1인
5.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관련부서장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의 운용계획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⑥~⑦ (생략)

3

무자격 조합원 배제 등 관리책임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 농·축·수협 회원조합 조합장 선거에 무자격조합원(허위서류, 위장전입)의 선거 참여로 선거 무효소송 등이 빈발한다는 언론 지적
 -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
 - ※ 선거관련 위법·부당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칙(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위등재죄, 사위투표죄⁴⁾ 등) 적용·처벌

■ ‘가짜’가 흔드는 조합장 선거…허위서류·위장전입 판처 (중앙일보, 2019. 3.)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가짜 조합원 논란으로 선거 무효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32건이었다. … (중략) … 2회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지시하기는 했다"면서 "지역별로 일부 정리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돼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현황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9. 3. 14.)

(2019. 3.13. 기준, 단위 : 명, 괄호안은 %)

구분	합계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임원 등의 선거개입	불법선거	기타
제2회('19. 3.)	402	247(61.4)	77(19.2)	11(2.8)	3(0.7)	64(15.9)
제1회('15. 3.)	369	228(61.8)	48(13.0)	10(2.7)	6(1.3)	77(20.9)

- 농·축·수협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거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으로 등재됨

4)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3조(사위등재죄) ①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4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선거일 180일 이후 가입자 및 이전 가입자이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당연 탈퇴 대상 (주소, 거소, 사업장 부재 등)은 선거인에서 제외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 2017. 12. 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19호)

제11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⑤ (생략)

제62조(선거인)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②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63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조합장 선거에 선거권 없는 당연 탈퇴 대상인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

※ 2018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탈퇴인원은 164천명이고, 그 중 무자격 탈퇴자는 94천여명임 (자격상실이 76천여 명으로 81.3% 차지)

사망		자격상실		이주		파산		기타		합계 (명)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1,313	12.0	76,467	81.3	2,502	2.7	173	0.2	3,646	3.9	94,101

- 조합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시켜야 하나, 조합장 이해관계 등⁵⁾에 따라 이사회의 확인 과정에서 허위조사 및 선거인 등재

5) 친인척 등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조합원의 당연 탈퇴, 조합원 탈퇴로 조합 설립 인가 기준(조합원 1천명 이상, 출자금 5억 이상) 충족이 어려운 경우, 수년간 조합원이었던 사람의 자격 박탈에 대한 부담감 등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 2017. 12. 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19호)

제11조(탈퇴) ①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 5. (생략)

③~④ (생략)

⑤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조합원 실태조사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19. 7.)

- (조합원 자격 입증서류 미비) 농·축협에서 관련규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입증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관행 또는 임의로 서류 첨부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
- (무자격조합원 정리 허위조사) 무자격조합원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당연탈퇴 처리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합원실태조사서를 작성
 - 영농을 하지 않는 무자격조합원을 별도 영농회로 관리하면서 조합원 신분 유지
 - 실제 개사육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
 - 양축기준 미달 조합원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 인정 등
-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조합구역 내 확인 소홀) 조합원은 주소, 거소, 및 사업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조합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실제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장 전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 등

개선방안

- 농·축·수협의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자격 당연 탈퇴대상에 대해서는 조합의 이사회에서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도록 정관례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이사회의 관리책임 명확화

※ 조합의 이사회의 '확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탈퇴조치를 이사회 의무로 규정, 무자격자를 이사회 의결로 탈퇴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관리책임 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

⇒ 농협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탈퇴) 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 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확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무적 탈퇴조치 명문화

⇒ 수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25조(탈퇴)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5조(탈퇴) ④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당연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4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등 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쳐 선임하나, 임원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

[인사추천위원회 추천대상 임원 현황]

구분	수협	농협
추천대상 임원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 규약 제3조(기능)	전무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 규정 제3조(기능)
관련규정	인사추천위원회 규약 (개정2016. 11.) ※ 수협법 제127조의2 및 정관 제55조의2	인사추천위원회규정 (개정2016. 12. 21.) ※ 농협법 제125조의5 및 정관 제50조의2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특정단체·학교 등에 집중되어 위촉되고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

■ 수협 인사추천위원회 특정단체·학계 밀어주기 심각 (국정감사지적사항, '18. 10.)

'12년부터 '18년까지 총 8회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 중 단체 추천은 한수원이 5회, 학계추천은 부경대와 군산대에서 총 7회 선정되는 등 이사회 의의에 따라 인사추천위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

■ '14~'18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 6.)

- ※ (수협) '14~'18년에 총 11회 인사위원회 구성 중 한국○○연합회(6회), ○○대(6회)
- ※ (농협) '14~'18년에 총 10회 인사위원회 구성 중 한국○○농업연합회(4회)

-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사실상 내부자 위주로 구성되어 후보자 모집이나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 생략 등 부실 운영 사례 확인
 - 농협의 경우 조합장 4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나, 외부전문가 중 1인은 사실상 내부자인 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로 규정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수협	농협
<u>총 5인</u> • 이사인 조합장 2 •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 해수부장관 추천 1 • 수산단체 및 학계 추천 외부전문가 2 ※ 인사추천위원회 규약 제4조(구성)	<u>총 7인</u> • 이사인 조합장 2, • 이사가 아닌 조합장 2, • 농업인단체 추천 1, • 조합장이 아닌 이사 1, • 학계 등의 추천 외부전문가 1 ※ 인사추천위원회규정 제4조(구성)

인사추천위원회의 부실운영 사례(농협)

■ 모집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 결여 (권익위 실태조사, 2019. 6.)

- (규정) 후보자 모집시 공개모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규정
- (현황) 자체적으로 후보자 풀을 만들어 인사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규정 위반
 - ※ 후보자 풀에 4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어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
 - ※ 대다수 공공기관은 임원 추천 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

■ 서류심사 생략 등으로 실질적 심사 부재 (권익위 실태조사, 2019. 6.)

- (규정) 인사추천위원회는 응모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 심사 대상자를 결정
- (현황) 서류심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집행부에게 최종 면접대상자 후보자 추천권한을 위임하여 집행부에서 추린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로 결정

■ 사외이사 선임 관련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17. 10.)

- 한국4H운동본부 이○○ 위원이 농민단체를 대표한 외부위원의 의견 미반영, 다수결 투표로 결정
- 현행처럼 외부위원을 농협에서 특정단체에서만 추천받고, 외부위원조차 사실상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천결정을 다수결투표 방식으로 하는 경우, 농협 집행부에서 내정한 인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농협) '14-'18년에 총 10회 인사위원회 구성 중 한국○○농업연합회(4회)

※ 농·축협, 수협 직원채용비리는 농식품부, 해수부에서 지역조합 채용실태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예정(9월~10월)으로 검토 제외

개선방안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특정단체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복수 단체의 공개추천'을 통한 위촉 등 외부위원의 특정단체 편중 방지에 대한 규정 명문화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인사추천위원회규정(농협중앙회)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 2. (생략) 3.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4. 회원조합장인 이사회의 이사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공무원 제외)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 신설 〉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인사추천위원회규약(수협중앙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 신설 〉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3호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은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복수의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을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여 선정한다.

- 인사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천대상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 마련
 - 임원 후보자가 형식적 서류심사 등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세부 심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인사추천위원회규정(농협) 제9조의2(후보자 모집방법)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조항분리 〉 제9조의4(심사절차) 위원회는 응모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신설 〉	제9조의2(후보자 모집방법) ① 위원회는 후보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방식, 추천방식, 공개 모집 · 추천병행 방식으로 후보자 모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4(심사절차) ① -----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인사추천위원회규약(수협) 제9조(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의결을 함에 있어 선출할 인원수에 해당하는 <u>후보자를 선정한다.</u> ③ 후보자의 모집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 중에서 <u>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u> 1. ~ 3. (생략)	제9조(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현행과 동일) ② ----- <u>후보자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한다.</u> ③ 후보자의 모집은 <u>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u>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 중에서 <u>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5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농협 및 수협중앙회는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의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 2018.12.기준 비상임 이사가 농협은 25명(조합장 이사 18명, 비조합장 사외이사 7명)이고, 수협은 19명(조합장 이사 14명, 사외이사 5명)임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활동수당 지급 규모]

구분	농협		수협	
	정액수당	회의참석수당	정액수당	회의참석수당
이사회 (비상임이사)	월 400 (연 4,800)	50만원(회)	조합장 월 150(연 1,800) 비조합장 월 200(연 2,400)	30만원(회)
감사위원회	월 300 (연 3,600)	50만원(회)	조합장 월 150(연 1,800) 비조합장 월 200(연 2,400)	30만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월 300 (연 3,600)	50만원(회)	월 200(연 2,400)	30만원(회)
지급근거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제22조 ▪ 「조합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 비상임 이사 등은 대부분 조합장으로 구성, 실비 성격의 회의참석수당 외에 목적이 불분명한 활동비·연구비 명목의 정액수당(농협 4백만원, 수협 2백만원) 지급은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수당이라는 비판 가능성 제기
 - 농협 조합장 비상임 이사는 해당조합으로부터 고액의 연봉(1억 이상)과 더불어 연간 4천만원 내외의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상황
 -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던 정액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축소하고 관련 내용을 전부 공개(알리오 등)하는 것과 대비
 - 농협은 비상임 이사에게 매월 급여성 활동비를 4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면서도, 이사회 사전의결을 통해 연 2회 특별활동수당도 지급하고 있어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 상존

■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회장 1, 전무이사 1, 상호금융대표이사1)와 비상임 이사 25명(조합장 이사 18명, 조합장이사 이외의 이사 7명) 총28명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수당 명목으로 이사회 참석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400만원 지급(4,800만원)하고,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특별활동수당도 연 2회 400만원씩 지급 (권익위 실태조사, 2019. 7)

[최근 3년 비상임이사 특별활동수당 지급 현황]

구분	지급 목적	지급 대상	지급액
'17. 3월	'17년말 농업부문 조세감면기한 도래에 따른 대외 농정활동 및 본회 이해증진활동 지원 강화	비상임이사 (25명)	4백만원
'17. 11월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운동 실시 및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정활동 지원	비상임이사 (25명)	4백만원
'18. 2월	설 명절 전후 귀향인사에 대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등 농업·농촌 및 본회 관련 농정활동 지원	비상임이사 (24명)	4백만원
'18. 11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관련 대외 농정활동 강화에 따른 지원	비상임이사 (25명)	4백만원
'19. 2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통한 농업인 실익지원 제고 등 농업·농촌 및 본회 관련 농정활동 지원	비상임이사 (25명)	4백만원

- 일부 회원조합은 선진전학 명목 관광이나 법적근거 없는 '특별 보로금' 부당지급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선심성 예산집행 사례도 확인

- 조합장 김○○ 등 ○○원에농협 임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후 참석한 임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관광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하기로 상호 합의한 뒤, 최종 조합장의 방침결정에 따라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지원 사업비 및 조합비용 총 11,141천원을 부당사용 (권익위 실태조사 시 농협제출자료, 2019. 6.)
- 조합장 안○○, 상임이사 류△△, 비상임이사 한◇◇ 등 16명은 2015. 12. 29.에서 2018. 12. 28.사이 총 6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비상임임원(이사·감사·사회이사)에게도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직원 특별보로금 지급'안건을 부당 의결하여 같은 기간 총 7회에 걸쳐 비상임임원 16명에게 특별보로금 총 150,000천원을 복리후생비 기타항목으로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모두 '주의 촉구'의 징계조치 (권익위 실태조사 시 농협제출자료, 2019. 6.)

개선방안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는 비상임 이사에게 심의수당 이외에 활동비, 연구 활동비 명목의 매월 정액지급 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
 - 사전의결을 통한 특별활동수당 일괄 정액지급은 폐지하고,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활동에 한정하여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 이사의 선임 및 퇴임 월의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농협) 제14조(활동수당) ①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활동비(이하 “활동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③ (생략) ④ 이사가 퇴임할 경우 퇴임월의 활동수당은 전액을 지급한다. ⑤ 이사회 의장은 <u>이사의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결로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제14조(활동수당) ①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수반되는 <u>다음 각 호의 소요되는</u> 활동비(이하 “활동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1. 대외 농정 및 본회 이해증진활동 지원 2. 귀향인사에 대한 농정활동 지원 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가 퇴임할 경우 퇴임월의 활동수당은 <u>일할 계산하여</u> 지급한다. ⑤ 이사회 의장은 <u>천재지변 및 재해(가축전염병 등), 농업 긴급현안활동 등</u> 이사의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결로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수협) 제22조(연구활동비 지급) ①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②~⑤ (생략)	①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u>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u>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1. 대외 수산업 및 본회 이해증진활동 2. 귀향인사에 대한 수산업지원 활동 등

-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부당한 선심성 예산집행 확인 시 관련 이사회 관계자에 대한 변상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 농협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운영기준(준칙)」등에 관련 내용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징계변상 운영기준(농협 예시) 제2절 부실경영 책임 및 이사회 부당의결 제32조(이사회 부당 의결) ①판단기준은 조합 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이 이사회 부당의결에 따른 방침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2장 변상책임액 결정 제1절 변상책임액 결정방법 제61조(횡령 등 고의에 따른 사고) ①사고관련자 본인 또는 제3자 등 특정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할 목적이거나 부당이득이 발생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고의(횡령 등 범죄행위를 포함한다)사고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해액 전액 이내로 한다. 다만, 행위자가 금리차액·시세차액 등 과실의 부당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이득액까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각종 자산의 피사취, 분실, 과오불, 배상 및 이와 유사한 사고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해액 전액 이내로 한다. 〈 신 설 〉	제32조(이사회 부당 의결) ①판단기준은 조합 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선심성 예산집행 포함)이 이사회 부당의결에 따른 방침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횡령 등 고의에 따른 사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선심성 예산집행 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해액 전액 이내로 한다</u>

6

부패행위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의 중대한 부패행위가 자주 확인되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징계로 종결되는 상황
 - ※ 수협의 경우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의 횡령사건 42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하고, 농협도 일부지역(예: ○○도) 확인결과, 대부분 자체징계로 종결

■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 사례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2019. 7.)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계건수	42건	1건	3건	10건	9건	19건
형사고발조치	5건	-	-	1건	2건	1건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수협	고객예탁금 및 조합비용 횡령					
B수협	경매수산물(꽃게) 일부 유용					
C수협	조합 운영비 업무상 횡령혐의 입건					
D수협	조합장 금품수수 및 업무상 횡령 판결					
J수협	현금시재 횡령					
K수협	허위위판거래로 미수금 횡령					
L수협	서류 위조로 대출금 횡령					
M시수협	활어센터 상인연합회 운영자금 횡령					
N수협	장어 등 판매대금 횡령					
B수협	어선건조자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 ○○도 농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 사례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2019. 7.)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축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자금횡령 등
D 축산농협	시재금 등 횡령
G 농협	고객 납부예정 세금 편취
A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품 부당사용 등
K 농협 지점	임직원 자녀학자금 횡령
N 축협	축산물 판매대금 횡령 등
D 농협 하나로마트	마트업무 관련 금품수수
C 농협	고객 저축성보험금 횡령
Y 인삼농협	시재금 절취 등
T 농협	농기계센터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U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축산물) 횡령 등

- 임직원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고발제외 기준을 농협은 1억 미만, 수협은 5천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여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있음

※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대상 금융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비교해서 과도하게 관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2019. 01. 13. 개정)

제4조(고발 등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 여부, 사고금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조합 인사위원회(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조합감사위원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횡령 또는 배임으로써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 6. (생략)

▶ (농협중앙회)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2015. 04. 28. 개정)

제4조(고발 등 대상) 조합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및 대가성 여부, 외부와의 공모, 손실발생 여부, 조합 실익여부, 고발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 4. (생략)

- 수협 「회원조합 감사규정」은 회원조합 임원에 대한 제재 사유로 중대한, 상당한 등 불명확한 기준이 사용되고, 중대범죄도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여부 결정 등 온정적 처리가 가능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 규정」 (2019. 01. 31. 개정)

제30조(임원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개선'사항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무정지'로 제재할 수 있고, '중대한' 또는 '상당한' 등 불명확한 기준을 징계사유로 사용

제32조(기타조치) 제5항은 "조합감사위원장은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선방안

- 임직원의 직무관련 자금 횡령 및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이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서 경미한 범죄행위 등 미 고발 대상은 제외하고, 중대범죄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예) 1백만 원 이상 횡령, 수재 등 의무적 고발대상 명시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조합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등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 조합임직원의범죄 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고발 대상 및 기준) 조합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의 및 대가성 여부, 외부와의 공모, 손실 발생여부, 조합 실익여부, 고발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금융알선 등에 의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제1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경미한 범죄행위	제4조(고발 대상 및 기준) 조합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임원은 이사회)는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의 및 대가성 여부, 외부와의 공모, 손실 발생여부, 조합 실익여부, 고발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공금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3. 사금융알선 등에 의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4. < 삭제 >

참고 공공기관 규정 사례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서울주택공사)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 누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 7. (생략)

- 수협이 경우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 사법적 제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범죄 발생 시 조합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에 따라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규정」 등에 반영

현행	개선안(예시)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32조(기타조치) ⑤ 조합감사위원장은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u> 1.~3.(생략)	제32조(기타 조치) ⑤ 조합감사위원장은 회원조합 감사와 관련하여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한 경우 <u>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에 따라 처리한다.</u>



IV. 협조사항

조치사항(요약)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1.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임공로금 지급제한	▶ 임원 보수 등 지급 기준변경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필수절차로 명문화하고, 퇴임 공로금 지급 비율 등의 변경 제한 ⇒ 수협중앙회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등에 반영	수협중앙회
	▶ 임원보수 규정 등에 명시적 근거 없는 공로금 등의 지급제한 근거 명확화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2. 회원조합 자금배정의 투명성 제고	▶ 정관(농협)으로 운영하는 이차보전자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예산 직접지원방식으로 변경 검토 ⇒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 지원 자금배정을 결정하는 ‘자금지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검토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심의위원회규정」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구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3. 무자격조합원 배제 등 관리책임 강화	▶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여 탈퇴조치 미 실시 등의 경우 관리책임 부과 근거 마련 ⇒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 정관례」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4. 중앙회사 추천위원회 운영공정성 제고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특정단체 편중 위촉 방지에 대한 규정 명문화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원칙'을 명문화하고, 구체적 후보선정 절차 규정 마련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상동
5.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실비 명목의 정액지급 활동비,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용범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명확하게 규정 ⇒ 농협 및 수협중앙회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 회원조합의 부당한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변상책임 근거 마련 검토 ⇒ 농협 및 수협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기준」 등에 반영	상동
6. 부패행위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임직원의 직무관련 중요 범죄행위가 자체 징계조치로 종결되지 않도록 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직무관련 공금 횡령 등 일정한 부패행위는 고발조치를 의무화 * 공금횡령 1백만 원 이상은 고발조치 ⇒ 농협 및 수협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등에 반영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조치기한

2020. 12월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19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4장

자발적 개선사례

제1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1절 /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사례



1.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 신설

평가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와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운영
* 공사가 체결하는 용역계약 내용 규정을 위해 용역계약특수조건 운영('08. 3. 17. 제정)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국가계약법 및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 담합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문제점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적발시 계약해지 이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며, 재입찰 절차에 따른 공사의 피해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재정의 낭비 초래

-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계약해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개선방안

-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을 두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추가 필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2. 퇴직자와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 승진자, 고위직의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 황

-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이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이후 재직직원과의 청렴 관련 준수사항 교육 등 관리체계 부재

문제점

- 퇴직예정자와 현 재직직원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례 * 발생

* 관련 위반자들에 대한 경징계(징계부과금 포함) 및 훈계·주의 처분요구

➡ 퇴직(예정)자의 향후 예상치 못한 조직 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청렴위반 관리체계 부재

개선방안

- 퇴직자 등과의 부조리한 수의계약 근절방안 마련
- 퇴직예정자 대상 「청렴면담제도【간담회(교육) 등】」 운영
- 부조리한 불법행위 등의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정 등의 명문화

개선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신 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 승진자, 고위직의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 승진자, 고위직의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예정자의 경우 청렴면담 등을 통한 퇴직 이후 청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퇴직(예정)자의 자발적 반부패·청렴의식 유도를 통한 조직 내 숨겨진 부패행위 파악, 퇴직자와의 부조리한 특혜성 계약 사전 차단



3.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평가대상 조문

- 제46조(정답확정 절차) ① 주무부서장은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문제와 정답가안을 검정시스템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수험자가 시험문제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정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한다.
- ③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한다.
- ④ 수험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신설 · 등록하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인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함

* 농어촌개발컨설턴트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조사 · 연구 · 계획 ·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민간자격 등록 후 2014년 국가공인 승인을 받아 국민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시험 운영 중

* 관련 사규 및 부서내 요령을 일원화하여 지침으로 제정 ('20. 8월 예정)

문제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으로 운영되는 민간 자격으로 현재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음. 지침 제정(안)은 수험자의 정답가안의

공개기간 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나 자격 관리자(공사)에 의해 정답 확정 공개 절차 생략이 가능.

- 정답 공개 절차의 생략 시 응시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가 미흡하고, 자격시험 관리부실의 불이익을 응시자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 국가공인자격제도에 맞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격응시자들의 원활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시험문제의 정답을 공개하는 절차를 강행규정화하여 국민 대상의 시험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개정

개선결과

현 행	개정안
제46조(정답확정 절차) ① 주무부서장은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검정시스템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험자가 시험문제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정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한다. ③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한다. ④ 수험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46조(정답확정 절차) ① 주무부서장은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검정시스템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② 수험자가 시험문제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정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한다. ③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한다. ④ 수험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에 대해 감경 불가 규정 신설

평가대상 조문

■ 인사규정

제72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3., ~2020. 2. 28.>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6.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2조의2(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 직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등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2조의5(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제3항에 따른 경고(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제77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7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 9. 26., 2016. 10. 21., 2018. 1. 26., 2019. 8. 23., 2020. 2. 28.>

[별표 3] 제72조의2 관련<신설 2013.4.25><개정 2014. 11. 28., 2017. 12. 20., 2019. 8. 23.>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반 (2~10 생략)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11.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정 제49조 제3~9호의 행위)	해임-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6. 27.]

▶ 취업규정

제4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6. 27.]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 규정의 구체성, 예측가능성

현황

- ‘부정청탁,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절차와 징계 관련 사항 정비를 위해 인사규정 개정(19. 8. 23.)
 - 갑질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사유에서 제외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 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양정기준 도입

문제점

- 인사규정 제72조(징계사유) 제1항 제5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와 제6호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상당부분 유사하여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구분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의3 중	취업규정 제4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중
관련 조문	(2호)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4호)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호)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호)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호) 그 밖에 직무관련자, <u>직무관련임직원</u> ,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규정	

- 또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 2.)」에 따르면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8개*)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및 기타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히 유사함

구분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중	직장 내 괴롭힘(취업규정 제49조 중)
비인격적 대우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3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호)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4호)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호)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8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호)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① 법령 등 위반 ② 사적이익 요구 ③ 부당한 인사 ④ 비인격적 대우
 ⑤ 기관 이기주의 ⑥ 업무 불이익 ⑦ 부당한 민원응대 ⑧ 기타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와 “직장 내 괴롭힘”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의 감경에서 유불리 발생 가능
- (징계양정) 유사한 성격의 비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 사안에 따라 담당자의 재량(판단)으로 비위의 유형이 결정될 소지가 있어 징계 예정자에게 유리(직장 내 괴롭힘 적용 시)하거나 불리(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적용 시)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징계의 감경)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와 “직장 내 괴롭힘”은 비위의 행위가 상당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이 가능하여 비위의 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 비위의 유형이 “직장 내 괴롭힘(취업규정 제49조 제3~9호의 행위)”과 중복되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중 제2호 및 제5호 일부 삭제

개선결과

현 행	개정안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삭제〉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평가대상 조문

제20조(감사반의 편성) ④ 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감사수행일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감사인이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문제점

- 감사인이 수행했던 업무나, 직계 존·비속의 관련성 및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감사인 배제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제사유 외 회피해야 할 경우의 근거가 필요함

개선방안

- 감사수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인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차단

개선결과

현 행	개정안
제20조(감사반의 편성) ④ 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감사수행일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감사인이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제20조(감사반의 편성) ④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그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1. 감사 실시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감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공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평가대상 조문

제6조의2(인사의 시기) 등 : 신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 황

- 부패발생 취약분야(내부규정)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의 불공정사항 점검 결과, 정기인사 시 승진 관련 인사기준은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하고 있으나, 전보 등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음
- 이에 승진 외에도 전보 등의 인사기준도 사전에 알려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칙」 개정을 요구하고자 함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제21조(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소속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문제점

- (준수)특혜발생 가능성,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행정절차)공개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승진, 전보 등의 정기인사 시기와 기준을 미리 공지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정기인사의 시기 및 인사기준의 사전공지 의무사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

개선결과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인사의 시기) 정기인사는 연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의3(인사기준의 사전공지) 주관 부서장은 직원의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사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부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 행 <공급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0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 개 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이의제기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감독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 · 징수 업무²⁾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부과 · 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부과 · 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 · 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과 · 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행정처분 등의 가중 · 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 · 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 · 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부과 ·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 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 · 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 · 처리기간 ·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2) 인 · 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 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⁵⁾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⁶⁾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 · 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 · 내용 · 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무단 · 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⁷⁾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 · 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 · 점검 업무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 · 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단속 · 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 ·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단속 · 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 · 점검의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 · 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단속 · 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위법 · 부당한 단속 · 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단속 · 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금품 ·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위원 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시 내부 · 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 · 기피 ·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 · 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 · 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 ·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절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 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손해의 적정성 · 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 · 처리절차 ·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 소관 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 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 등 소관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 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 ·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①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 징수 방법, 감정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②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③ 행정업무의 위임 ·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행정기관 간 위임 · 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 · 감독 등 규정
 - ※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 · 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④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의 수집 · 처리 기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⑤ 행정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규정

⑥ 행정처분 · 사전통지 · 청문 등 : 「행정절차법」

-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 · 공청회, 행정예고 · 행정지도 등 규정

색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98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7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89
고용보험법 시행령	13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86
교육공무원임용령	1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7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5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6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160, 17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191
노인복지법 시행령	6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10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18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8
발명진흥법 시행령	11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4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77
선박법 시행령	4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95
수산업법 시행령	124
습지보전법 시행령	107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73
유아교육법 시행령	63
인권보호수사규칙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전국과학전람회규칙	36
주택법 시행령	142, 18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6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3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13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14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8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19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발행일 : 2020. 12.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편 집 :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Tel. 044-200-7664, 766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우편번호 30102)

※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의 및 개선 건의는 위 전화번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